

성별영향
평가센터 사업
운영 안내

제1장	사업개요	3
제2장	사업 추진체계	7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11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15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25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47
부 록	별도서식 등	55

사업개요

1 목 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지원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성별영향평가법 등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체계적 운영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2 근거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추진경과

- '08. 6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의2)
- '08. 3월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 운영규정」 훈령 제정
 - 센터 지정기준, 기능, 인력 자격기준 등 규정
- '08. 5월 성별영향평가센터 5개소 지정·운영
- '12. 3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11.9월 제정)
 -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 '12. 3월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 운영규정」 훈령 폐지
- '12. 10월 「성별영향평가센터」 17개소 지정·운영
 - 중앙센터 지정(1개소) 및 시·도별 각 1개소씩 지정(16개소)·운영
 - ※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14. 9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신청 절차규정 삭제
- '16. 12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대상기관 범위 명확화(제17조)
- '17. 3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 지자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근거 마련(제10조의2)
- '18. 3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제도명칭 변경
- '18. 3월 대전세종연구원을 대전·세종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
 - 세종특별자치시의 성별영향평가 지원 기관 명문화(또는 명시)
- '19년 지역 양성평등센터 사업 추진(4개소)
- '21년 거점형 지역 양성평등센터 사업 추진(1개소), '22년 1개소 추가
- 연도별 센터 현황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5	5	8	9	17	17	17	17	17
지역 양성평등센터	-	-	-	-	-	4	4	5	6

4 사업규모 및 지원예산

- 사업기간 : 2008년도 ~
- 사업규모
 - 성별영향평가센터 17개소
 -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1개소,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16개소
 - * 이하 “중앙 센터”, ** 이하 “지역 센터”
 - 일반형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
 - 인천, 경기, 전남, 경북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에 ‘지역 성평등 환경조성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양성평등센터로 기능 확대·전환(19년~)
 - 거점형 지역 양성평등센터 2개소(21년~)
- 사업예산 : 총 2,971백만원(여성가족부 국비 100%(위탁사업비))
 - 성주류화 제도 운영(성별영향평가센터) : 2,474백만원
 -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양성평등센터) : 497백만원
 - ※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시범운영) : 193백만원 / 190백만원 (지자체 보조 50%, 별도예산)

5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증 전 (2021년)	개 정 (2022년)
	내 용	내 용
운영 인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실무 경력자 • 전담인력의 센터장 겸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인력은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센터장과 그 밖의 인력은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센터 직원 간 업무가 균형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u>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실무 경력자</u> • 전담인력의 센터장 겸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인력은 2인 이상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함. 다만, 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u>센터장 자격요건을 갖춘 전임 인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인력은 반드시 4명(전임 2명, 지원 2명)이상을 유지하여야함.</u>
인건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수, 정규직전환 여부로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u>운영 인원을 고려하여 차등지원</u> (차등지원기준) 관할기관수(80%), 전환인원 등(20%)
기타(예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센터 사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센터의 경우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홍보비 집행가능 • 감사비 지급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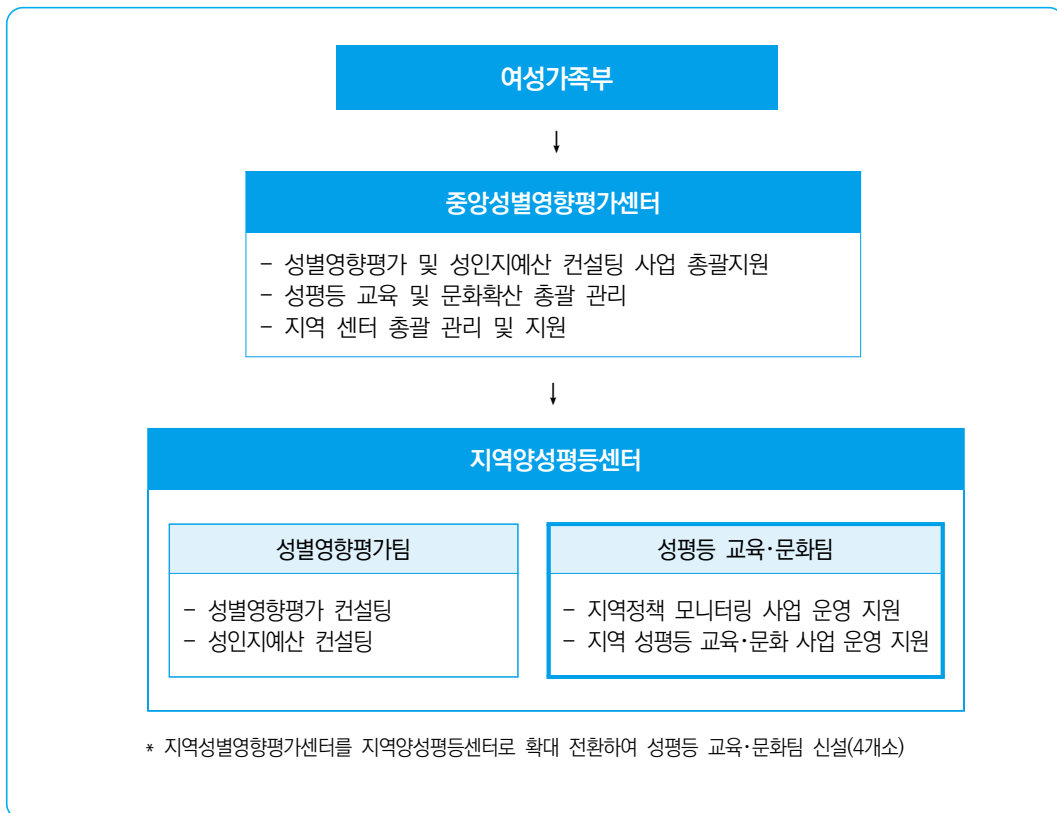
CHAPTER

2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추진 체계도

제1장
포괄개요제2장
사업 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서열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요건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2

사업주체별 역할

가. 여성가족부

- 센터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센터 운영 예산 지원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체계 구축·운영
- 센터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 센터 운영 및 사업전반 총괄
-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양성 총괄 등

나.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 및 관리·지원
 - 지역센터 관리·지원(지역센터 예산·사업배분, 실적 평가·보고·모니터링 등)
 - 지역센터 컨설팅 관리·지원 및 모니터링
 - 지역센터 컨설턴트 위촉 현황 및 교육 수료 현황 관리 총괄
-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 전문가 검토를 통한 대상사업 발굴 및 전문가 심층분석 평가 실시
 -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정책개선 지원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사업 총괄지원 및 컨설턴트 관리
 -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법령·사업)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자문
 - 중앙행정기관 정부홍보물(인쇄물 및 영상물) 성별영향평가 운영
 - 컨설턴트 위촉 및 교육 현황 관리
- 성별영향평가 제도개선 지원
 - 평가지표, 분석기법 개선·개발 지원
 - 제도 운영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
 - 성별영향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 국내외 성별영향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 중앙 및 지자체 정책 개선 이행점검 총괄·관리 지원 등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우수기관, 우수사례 등 선정 지원
 -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대국민공모 포함), 이행점검 및 연구전략 개발 지원
-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관련 컨설턴트 추천, 지역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 유지
-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 컨설팅 및 이행점검
- 전국 성별영향평가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포럼 개최
-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지원
 - 해당 지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 해당 지역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이행점검
 - 대상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및 중앙센터의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시, 해당 지역별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이행점검, 정책 개선 우수사례 선정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정부홍보물(인쇄물 및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운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포럼 개최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 지역별 성별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관련 컨설턴트 추천, 중앙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 유지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장
모범사례제2장
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기준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요령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CHAPTER

3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1

기본방향

- 전국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정책개선 모니터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 지정된 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성과와 운영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취소 등을 실시하며, 지정기간 만료 시 공모를 통해 새로 지정

2

지정대상

- 다음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연구기관('16. 12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제1장
의의제2장
사업 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3

지정절차



가. 성별영향평가기관 모집

- 모집 공고 :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공모
- 지정 희망기관은 「중앙(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업무수행계획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신청인, 기관개요, 연구경력 등 평가기관 관련사항 기재
- ② 업무수행계획서 : 기관의 인원, 조직, 운영실적, 운영계획 등 기재
- * 지정 신청서 서식 : [서식 1] 참조

나. 지정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 성별영향평가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참여
- 심사내용
 -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경력
 -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인력 확보 수준
 -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 현장실사

- 연구기관이 제출한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등을 점검
- 현장실사 시에는 운영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조건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
 - * 다만, 종전에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지정·운영 중이던 기관에 한해서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지 실사 절차 생략 가능

다. 지정결과 통보

- 심사 결과, 센터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사한 경우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평가 기관’ 지정서를 해당 연구기관에 교부(지정기간 3년 이내)
-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센터 지정서는 상담실 등 사무실 내부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 센터 지정서 서식 : [서식 2] 참조

4

지정취소 기준

-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 필요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의견 청취 포함)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지정취소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유용하여 사업비가 환수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지정·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1

명 칭

- 명칭은 “여성가족부 지정 중앙 또는 ○○(시·도) 성별영향평가센터”로 하며, 아래와 같은 현판을 별도로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지역 양성평등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4개소의 경우 “○○(시·도) 양성평등센터” 또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명칭을 자율적으로 선정(여성가족부 승인 후 사용)
 -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기존 시설의 현판과 동일한 규모 이상으로 제작하며, 가로 현판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세로 현판 부착 가능함

<p style="font-size: small;">여성가족부 지정</p> <p style="font-size: large; font-weight: bold;">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p> <p style="font-size: small;">Central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p>
<p style="font-size: small;">여성가족부 지정</p> <p style="font-size: large; font-weight: bold;">○○시·도 성별영향평가센터</p> <p style="font-size: small;">○○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p>
<p style="font-size: small;">여성가족부 지정</p> <p style="font-size: large; font-weight: bold;">○○시·도 양성평등센터</p> <p style="font-size: small;">○○ Gender Equality Center</p>

- 현판, 현수막,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시에는 센터 명칭 앞에 ‘여성가족부 지정’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함

2 운영인력 관리

가. 인력 채용 요건

1)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장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또는 여성정책 관련 연구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실무 경력자
센터직원	기본인력	성별영향평가팀
	전문인력	연구원급 이상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또는 여성정책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실무 경력자 우선 채용
		성평등 교육·문화팀
		여성정책, 교육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전공, 연구·실무 경력자 우선 채용

2) 인력채용

- 센터장은 기존 기관의 장이 겸임할 수 있음
 - *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는 제외
- 전문인력 등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최소 7일 이상 공고
 - * 기존기관의 인력도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였을 경우 전문인력으로 채용 가능
- 전문인력 등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채용하여야 함
- 인력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배치기준 및 수행업무

- 센터에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구 분	인 원	수 행 업 무
센터장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운영 총괄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수행 지휘·감독 - 직원에 대한 업무 부여·관리,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직원 (전문인력 포함)	성별영향 평가팀 (3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정책 및 전문가, 컨설턴트 등 DB구축, 지역별 성별 통계 관리 ○ 이행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홍보 ○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자체 현안사항 지원(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사례 개발 등)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등
	성평등 교육·문화팀 (2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사업 ○ 지역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 교육, 지역 주민 참여형 홍보 및 캠페인 등)

* 센터별 여건에 따라 수행업무 내용 조정 가능

다. 근로조건

1) 복 무

- 센터 인력은 2인 이상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함. 다만, 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센터장 자격요건을 갖춘 전임 인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인력은 반드시 4명(전임 2명, 지원 2명)이상을 유지하여야함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는 6명 이상
- 센터 직원(전문인력 포함)은 1일 8시간 종일제 또는 유연근무제(탄력근무)로 근무할 수 있음
- 센터 직원(전문인력 포함)의 유급 출산휴가(3개월)를 인정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 휴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을 따름

제1장
제1장
제1장제2장
제2장
제2장제3장
제3장
제3장제4장
제4장
제4장제5장
제5장
제5장제6장
제6장
제6장제7장
제7장
제7장

2) 인건비

- 센터 직원 중 전문인력의 인건비는 아래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다만, 사업운영주체의 부담으로 경력을 고려해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상향 지급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센터장 등 기타 인력의 인건비는 사업운영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구 분		지 급 방 법	지원여부
센터장		○ 운영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미지원
센터 직원	기존 인력	○ 운영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미지원
	전문 인력	성별영향평가팀(2명) ○ 기본급 : 연구원급 1인당 월 3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수당 : 연간 27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	지 원
		성평등교육·문화팀(1명) ○ 기본급 : 연구원급 1인당 월 29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수당 : 연간 27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	지 원
	거점형 지역 양성 평등 센터	센터장 ○ 기본급 : 연구원급 1인당 월 41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수당 : 연간 27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	지 원
전문 인력 ○ 기본급 : 연구원급 1인당 월 29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수당 : 연간 27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			

- 전문인력 등의 인건비는 당사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여야 하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센터에 보관하여야 함
- 전문인력 등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은 운영주체에서 부담함
* 단, 불가피할 경우 여성가족부와 사전협의 후 위탁사업비 내 일반관리비에서 충당할 수 있음
- 센터 운영 예산에서 사용가능한 운영비는 위탁사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한함
예) 컨설팅·포럼 등에 따른 전문인력 출장비 등
-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3) 퇴직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 사업운영주체는 인력 지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금액 한도 내에서 매달 퇴직급여총당금을 적립하고 별도 관리함(공공기관의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집행잔액은 운영비 혹은 기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정산 시 반납함
 - *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총당금 미사용분 포함

라. 임면사항 보고 및 관리

- 센터장은 전문인력 등의 관리대장(임면 등)을 작성·비치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함
- 센터장은 직원(전문인력 포함)의 임면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센터장 및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 관련 연구실적, 경력 등을 공문으로 제출
 - * 센터장과 직원은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채용 가능
 - 이후 중앙센터장 및 시·도지사에게 직원 임면현황 제출

마. 역량관리

- 센터 신규 전문인력은 연 2회(상·하반기) 이상, 기존 인력은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에 참가하여야 함

3

운영 관리

가. 센터 사업실적 및 계획 작성·제출

- 각 지역 센터장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센터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중앙센터장은 각 지역센터의 자료를 종합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서 서식 : [서식 4] 참조

나. 장부 등의 비치

- 센터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2년간 비치해야 함.
단, 여성가족부 위탁사업비 예산 집행(재무·회계장부 등)과 관련한 사항은 5년간 보존

〈관리·사업에 관한 장부〉

- (1) 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종사자 관리 대장(채용관련 서류, 자격 관련 서류 등)
- (3)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4) 문서접수·발송대장
- (5) 분기별 컨설팅 실적 보고서
- (6) 위탁사업 착수·중간·결과보고서(서식 5·6)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1) 총계정원장 및 사업별 수입·지출부
-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3) 예산서 및 결산서
- (4) 비품수불대장(필요시)
- (5) 비품관리대장(필요시)
-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7) 각종 증빙서류 및 그밖에 필요한 서류

4

변경사항 등의 보고

- 센터장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후 승인 받아야 함

* 지역센터장은 중앙센터장 및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중앙센터장이 지역센터의 변경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함

- 센터장은 인력* 및 시설, 소재지 등에 변동사항 발생시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서식 2]의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서 발급은 생략할 수 있음
 - * 센터 구성 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 인력 관련 연구실적, 경력 등을 공문으로 제출
- 센터장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 3]의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휴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이후 중앙센터장 및 시·도지사에게 폐지·휴지 현황 제출

5

지도·점검

가. 지도·점검의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함

나. 지도·점검 원칙

- 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예산집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소속공무원이 센터를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이고 취지를 설명하여야 함

다. 지도·점검의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사업별 추진사항 등 운영 전반(예산집행실태 필히 포함)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 공무원 및 중앙센터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제1장
일반규칙제2장
사무규칙
제3절
예산·회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취
지 및 운영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규칙제5장
세부사업 운영
규칙제6장
예산의 지출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라.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센터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센터 운영을 폐지 또는 휴지한 경우
 - 사업의 목적 및 지침상 사업별 추진범위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의 교부를 받은 때

6 센터 운영사업 관련 세부 추진일정

주요 내용	업무 흐름	기한
○ 사업 안내 및 확정	여성가족부 → 시·도 → 센터	'22. 1월
○ 운영사업 지침 배포	여성가족부 → 시·도, 센터	'22. 1월
○ 위탁계약 체결	여성가족부 → 중앙센터	'21. 12~ '22. 1월
○ 착수보고회 개최	중앙·지역센터, 시·도	'22. 2월
○ 중간보고회 개최	중앙·지역센터	'22. 7월
○ 센터 지도·점검	여성가족부, 중앙센터, 시·도	'22년 상·하반기
○ 결과보고회 개최	중앙·지역센터, 시·도	'22. 12월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지역센터 → 중앙센터 → 여성가족부	'22. 12월

제1장
총론제2장
사업 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7

성별영향평가센터 현황

지 역	구 분	기 관 명	지 정 기간
서 울	중 앙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21.1.1. ~ '23.12.31.
서 울	지 역	서울여성가족재단	'21.1.1. ~ '23.12.31.
부 산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1.1.1. ~ '23.12.31.
대 구		대구여성가족재단	'21.1.1. ~ '23.12.31.
인 천 (지역양성평등센터)		인천여성가족재단	'21.1.1. ~ '23.12.31.
광 주		광주여성가족재단	'21.1.1. ~ '23.12.31.
대 전· 세 종		대전세종연구원	'21.1.1. ~ '23.12.31.
울 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1.1.1. ~ '23.12.31.
경 기 (지역양성평등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1.1.1. ~ '23.12.31.
강 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1.1.1. ~ '23.12.31.
충 북		충북여성재단	'21.1.1. ~ '23.12.31.
충 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1.1.1. ~ '23.12.31.
전 북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전북연구원	'21.1.1. ~ '23.12.31. ('22.1.1 ~)
전 남 (지역양성평등센터)		전남여성가족재단	'21.1.1. ~ '23.12.31.
경 북 (지역양성평등센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1.1.1. ~ '23.12.31.
경 남		경남여성가족재단	'21.1.1. ~ '23.12.31.
제 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1.1.1. ~ '23.12.31.

CHAPTER

5

세부 사업 운영

1

기본방향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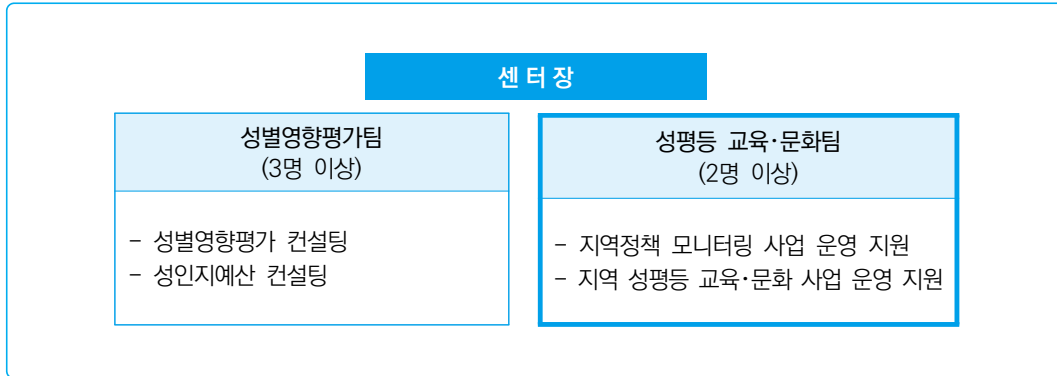
-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성별영향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 정책수요자의 성별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현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 지역 정책의 성주류화 확산으로 지역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향상

기 능

-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 지원
- ◆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 ◆ 지역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등
- ◆ 지역별 성별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 ◆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운영, 정책 모니터링 사업 수행
- ◆ 유형별·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확산으로 양성평등의 지역 격차 해소
- ◆ 이행점검 및 컨설팅의 환류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내실화

제1장
정책·사업
기본제2장
사업
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
내부 지침 제정제4장
성별영향평가
내부 지침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출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2 성별영향평가센터 조직(지역)



* 지역양성평등센터의 경우 성평등 교육·문화팀 구성·운영

3 세부 사업 운영

3-1 성주류화 제도 운영

가. 컨설팅 지원

1) 목 적

- 성별영향평가법 제정('12.3월 시행)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전 과정에 전문가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각 기관의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 시행 지원
- 국가재정법 제정('06)으로 '10년 회계연도부터 중앙정부 예산에 대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제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정('11)으로 '13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자문 필요
 -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사업 선정 및 컨설팅 등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도모
 - 지방재정환경에 적합한 성인지예산 실행방안 마련

2)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방식

- (컨설팅 대상) 중앙 및 지자체(교육청 포함) 성별영향평가 기관 및 과제 담당 공무원
- (컨설팅 내용)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정책개선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등 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상담 및 자문
- (컨설팅 방식) 대면, 서면, 전화
 - * 대면 컨설팅 : 기관 방문상담 및 대면회의를 통한 컨설팅
 - * 서면 컨설팅 : GIA 시스템(<http://gia.mogef.go.kr>),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컨설팅
- (컨설팅 유형) 기관 컨설팅 또는 과제 컨설팅

【기관 컨설팅】

- 컨설팅 대상 : 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 실무담당자(관리자 포함)
- 컨설팅 내용 : 해당기관의 조직·인력·예산 및 교육현황 등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점검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상담 및 자문 실시

【과제 컨설팅】

- 컨설팅 대상 : 실무담당자 및 과제담당자
- 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컨설팅 : 대상과제 선정단계(실무 담당)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단계(과제 담당) ⇒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종합검토의견 작성단계(실무 담당) ⇒ 정책개선 단계(과제·실무담당)

4) 컨설팅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법령 및 성인지예·결산 과제당 4만원 한도
- 사업, 계획, 홍보물 컨설팅 과제당 6만원 한도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수당 지급 시 컨설턴트 명단, 컨설팅 일지 등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제출
 - * 여성가족부 지원예산으로 인건비가 편성된 인력(전문인력)은 컨설팅 수당 지급 불가

○ 지원금 반환 및 환수

- 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5) 컨설턴트 운영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자격요건

자격요건

- 여성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보건학, 도시공학(건축학), 과학 등 다양한 전공계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다음의 요건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 * 석사학위 미소지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에 2개 이상 해당되는 자
 - 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 ②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 ③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활동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④ 시민단체 활동가 중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지역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와 시민단체활동가 중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수료자(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별영향평가 전문강사과정 등)

* 각 센터에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자격요건을 추가·조정하여 선발 가능

○ 컨설턴트 선발 및 구성 기본원칙

- 각 센터별 최소 10인 이상의 컨설턴트를 선발하되, 활동기간은 1년 단위로 함
- 기관 내 소속연구원이 전체 컨설턴트의 3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노력
 - * 학계, NGO, 유관연구기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
- 지역의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대면컨설팅이 용이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선발
- 법령에 대한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위하여 법 관련 전문가 또는 법학 전공자 1인 반드시 포함

* 각 센터에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선발·구성요건을 추가·조정 가능

○ 컨설턴트 배정 및 운영원칙

- 신규 컨설턴트 배정 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컨설턴트 양성 교육 이후 컨설턴트 배정
- 기관별 컨설턴트 1인 전담배정 및 컨설팅 연속성을 위하여 전년도 전담기관 우선배정(지역센터)
- 컨설턴트 전문분야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 컨설턴트 배정(중앙센터)
- 컨설턴트별 전담기관에 대해 대면(방문) 컨설팅 연 1회 이상 실시 권장(대면컨설팅이 곤란한 지역(도서지역 등)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컨설턴트 위촉절차 및 해촉기준

- (위촉) 컨설턴트 선발 및 교육실시 후 컨설턴트 위촉장 수여(내부·외부 컨설턴트 모두 대상)
 - 센터장 명의 또는 각 센터가 소속된 연구기관 등의 장 명의 위촉장 [서식 8] 수여
 - * 변동사항은 분기별로 보고
- (해촉) 센터장은 컨설턴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음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출장거부 그 밖의 사유로 컨설턴트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컨설턴트 교육

- 양성교육(상·하반기 각 1회)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

- (대상) ① 신규 위촉 컨설턴트 ② 신규 전담인력 및 위촉 3년 미만 컨설턴트 중 양성교육(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또는 센터 자체 주관) 미 수료자
- (교육내용(안))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방향 및 주요 이슈 공유
 - 성인지 관점 및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결산 제도 이해
 - 컨설턴트 역할 이해 및 컨설팅 우수 사례 공유

- 보수교육(센터 자율 실시, 연 2회) : 지역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 (대상) 활동 중인 컨설턴트
- (교육내용(안))
 -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결산 제도 운영 및 지역 컨설팅 우수 사례 공유
 - 컨설팅 애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등

제1장
총론

제2장
총론
배경과 목적

제3장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제4장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출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 심화교육(상·하반기 각 2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

- (대상) 센터장, 전담인력, 위촉 3년 이상 컨설턴트
- (교육내용(안)) 컨설턴트 정책개선 워크숍
 -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 사례 공유 및 토론
 -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결산 제도 운영 및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 제도 개선 Action plan

○ 전문분야 지원 컨설턴트단 구성 및 운영(중앙센터)

- (목적) 분야별 전문인력풀(pool)이 부족한 지역센터 컨설팅을 전문분야별로 지원하여 지역의 컨설팅 질 제고 및 컨설턴트 역량 강화
- (구성 및 역할) 중앙센터에서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단을 구성하고 지역센터에서 요청 시 성별영향평가 관련 상담·자문 실시
 - * 보건·복지, 지역개발·교통, 과학, 교육, 문화, 환경, 경제, 산업, 농어업, 행정 등
- (운영방법)
 - 비용은 지역센터 컨설팅 사업비 내에서 과제별 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 요청내역 및 자문결과를 중앙센터에 제출(분기별)

6) 컨설팅 관리 및 실적보고

○ (중앙센터) 컨설팅 사업 총괄 관리·지원

- 지역별 컨설팅에 대한 중앙센터의 허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컨설팅 관리·모니터링, 컨설팅 지원 및 전국단위 컨설턴트 네트워크 구축
- 컨설턴트 위·해촉 현황, 교육 이수 현황, 활동 현황 총괄 관리
- 지역간 컨설팅 우수사례 주기적 공유, 컨설팅 현장 활용매뉴얼 및 컨설팅 전략 및 기법 개발·연구 등 추진

○ (지역센터) 컨설팅 추진단계별 컨설턴트 활동실적 관리

- 각 센터는 컨설턴트가 대면컨설팅 및 일지작성 등 활동원칙을 준수하여 컨설팅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및 관리
- 분기별 컨설턴트 위·해촉 현황, 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관리하고 분기별로 현황을 보고
- 매월 컨설턴트 활동일지를 점검·관리하고 분기별로 활동실적을 보고

- ☞ (실적보고) 각 지역의 센터장은 분기별 컨설팅 실적을 [서식 7]의 붙임 1,2에 따라 중앙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센터장은 센터별 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기간 종료 후 컨설팅 실적보고서는 [서식 7]로 제출

나.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1) 목 적

- 2021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이행점검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연계성 강화

2) 주요내용

- (중앙센터)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총괄 및 우수 사례·기관 선정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에 대한 심층 분석 총괄
 - 기관별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선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 상시 구축
 - 우수사례 및 기관 선정 회의 구성·운영
- (지역센터) 각 센터는 해당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분석 지원, 정책개선 우수사례 선정 등 지원
 -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 및 우수사례·기관 선정 등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 구축 지원
 - 우수사례 및 기관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제공

3) 추진시기 : (중앙센터 → 여가부) '22.6월 이내 작성·제출

- ☞ 각 지역에서는 이행점검 결과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 등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소관 기관 및 중앙센터에 제출(3월)하고,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의 이행점검 결과, 중앙 및 지자체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6월)

제1장
일반제2장
행정
조직
및
제도제3장
행정
운영
및
정책
개발제4장
성별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
및
회계
관리제7장
부록
및
별첨

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1) 추진배경 및 목적

- 성별영향평가법 제정(12.3월 시행) 및 성인지예산제도 확대 시행으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양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마련
 -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선안 도출 및 실행의 연계 강화

2) 사업내용

- 전국 및 지역단위 포럼 개최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기반 구축
 -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및 정책개선의 연계성 강화 지원, 제도의 효율성 증진 방안 논의 등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방안 모색
- 참석대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포함), 시민단체, 의회, 학계, 공무원, 언론, 일반시민 등
- 포럼 관련 초청장, 현수막, 자료집 등 제작 시 주최는 '여성가족부', 주관은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평가센터' 명시

3) 추진시기

- 연중 1회 개최

라. 정책개선 지원 및 이행점검

1)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정책개선 지원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서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시 외부 전문가의 체계적 분석 지원
 - 성별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 심층 검토
- 작성대상 및 내용 : '22년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대상과제

작성 대상		작성 내용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발의 법령 제·개정안 ○ 의원발의 법률안(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지표 적용 및 내용의 적절성 검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이 국가 성평등지수 및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달성률과 연관성이 높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조치 및 개선계획 도출안 검토 ○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종합검토의견 작성 및 개선사항 검토·제안
정부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 + 영상물 	

○ 추진시기 : 상시

2) 정책개선 이행점검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및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자료 구축

- 매년 각 센터는 해당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행점검 실시
- 지속적인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분석, 환류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중장기 환류 실적 사례 관리 등

○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이행과 환류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단 구성

- NGO, 일반시민 등 참여

○ 추진시기 : 상시

○ 이행점검 실적 관리 및 실적보고

- (중앙센터) 이행점검 총괄 관리·지원
 - 지역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총괄관리, 이행점검 기법 개발 등 추진
 -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이행점검 대상 과제 추출 및 지역센터에 공유
- (지역센터) 주기적 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연중 소관 기관의 이행점검 필요 대상 과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센터 및 소관 기관에 보고

제1장
정책방향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내년 임시 점검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모형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 매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시, 이행점검 실시를 지원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중앙센터 및 소관기관에 보고(연 2회 / 3월, 9월)

〈'21년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시, 이행점검 대상〉

- * 법령 : '12~'21년(단, 지자체는 '16년~'20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통보가 수용된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
- * 계획·사업 : '20~'21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통보가 수용된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

☞ (실적보고) ① 각 지역의 센터장은 이행점검 실적을 [서식 9]에 따라 중앙센터 및 소관기관에 제출하고, 중앙센터장은 센터별 실적을 종합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② 각 지역의 센터장은 각 기관이 제출한 종합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점검 실적을 [서식 9]에 따라 중앙센터 및 소관기관에 제출하고, 중앙센터장은 이를 종합하여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 실시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이행점검

1) 목적

- 시의성 및 현실성 있는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의 이행을 제고

2) 주요내용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발굴 지원
 - 일반국민 및 NGO 대상 대국민 공모 지원
 - 전문가 및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등 대상 수요 조사 및 의견수렴
-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현황 관리기준 및 점검절차 등 마련
 - * 수용·일부수용·불수용 판단 기준, 이행 완료 처리기준, 미이행·불수용 사유 유형별 분류 등 이행 점검 체계 마련
 - '13년~'21년 특정평가 개선권고 과제를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이행현황 전수점검 실시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이행점검 및 컨설팅

1)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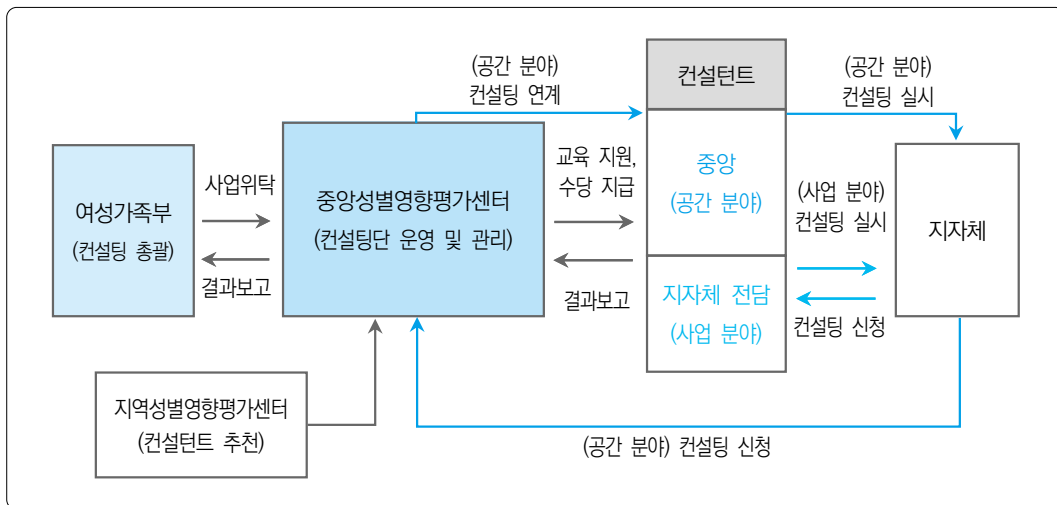
- (컨설팅 대상)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95개 도시, 신규 및 재지정 준비 도시
 - * 신규지정 신청 도시 및 재지정 탈락도시 포함
- (컨설팅 내용)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도시계획·건축·도시재생 계획 수립 시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기간) 연중 상시

○ 사업 추진체계

- (여가부) 컨설턴트 위촉, 컨설팅 안내 등 컨설팅 사업 총괄
- (중앙센터) 컨설팅단 운영·관리 및 컨설턴트 교육·워크숍 등 지원, 공간 분야 컨설팅 접수 및 연계
- (컨설턴트) 지역별·분야별 전문 컨설팅 수행

- (중앙 컨설턴트) 도시계획(재생)·건축·교통·주택 등 공간 분야 컨설팅 지원
 - * 전문 분야 인력풀(pool)이 부족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중앙센터에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지자체 요청 시 컨설팅 연계
-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 여성친화도시 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개선 등 사업 전반 지원

- (지역센터) 컨설턴트 추천 및 중앙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 유지



제1장
정책방향

제2장
사업추진체계

제3장
사업운영현황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 사업내용 및 절차

- (컨설팅) 지자체 대상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대표사업 개발, 공무원·주민 대상 교육 및 추진체계 구축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분야) 공간정책(도시설계(재생), 건축, 교통, 주택 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별 사업(돌봄, 안전, 여성참여 등)

【컨설팅 내용】

- ◆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 내 협업체계 구축 방안 검토
-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 수립·지원, 조례의 제·개정 필요 사항 검토
- ◆ 공무원·시민 대상 교육 방안, 조성협약체 구성·운영 방안
- ◆ 지역 유관사업과 연계 방안, 지자체 내 추진체계 확립 방안

【영역별 세부 내용(예시)】

영역	내용
관련 조례의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여성발전조례와 여성친화도시 조례 관계 •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방향, 내용 검토 및 조정 •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시 의회의 역할
지역 여성 정책 수요 조사 및 주민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요구조사 방법 • 각종 편의시설 이용에 관한 욕구조사 방법
조성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계획 및 세부사업 수립 방안 • 부서별·분야별 사업 과제 분류 방안 • 지자체 장기발전 비전과의 연계 방안 • 국내·외 정책 우수사례 제시
주무부서 및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조직 주요 업무 및 역할 • 주요 사업 운영에서 협력체계 구축
조성협약체 구성 및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방법 및 범위 • 사업아이템 및 서포터즈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공무원 및 시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필요성 및 사례 강의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교육과 연계 방안 • 의원 및 시민대상 프로그램 제안
사업 관련 기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전문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건축, 의료, 환경 관련 전문가 발굴 방안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

- (절차)

단 계	공간 분야, 신규·재지정 (재)준비 컨설팅	사업 분야 컨설팅
① 컨설팅단 구성	(중앙센터) 중앙 컨설팅단 구성 (여가부) 컨설턴트 위촉	(중앙센터)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 전담 컨설팅단 구성 (여가부) 컨설턴트 위촉
↓		
② 컨설팅 신청 (지자체)	중앙센터에 신청 * 중앙센터에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식 (부록 서식 14)에 따라 작성·제출, 동일 건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제출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에게 직접 신청
↓		
③ 컨설턴트 배정	(중앙센터) 지자체에 컨설턴트 연계	-
↓		
④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현장방문, 유선,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컨설팅 제공	
↓		
⑤ 결과 보고	(컨설턴트→중앙센터) 반기별(연 2회) 컨설팅 수행일지(서식 16) 제출 4/4분기말 컨설팅 총괄보고서(서식 17) 제출 * (컨설팅 수행일지) 동일 건에 대해서는 누적하여 작성 (중앙센터→여가부) 반기별(연 2회) 컨설팅 종합 결과 보고(서식 18)	
↓		
⑥ 결과 환류	(여가부)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중앙센터) 컨설팅 결과를 컨설턴트 교육·워크숍 등에 활용	

- (워크숍) 컨설팅단 운영계획 안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사례 분석을 위한 컨설턴트 워크숍 개최(상·하반기, 연 2회)

○ 컨설팅단 구성

- (선발 및 구성 기본원칙)

- 중앙 컨설팅단은 10인 이상, 지자체 전담 컨설팅단은 2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함
- 기존 컨설턴트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 선발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와 겸임 가능
-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는 지역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대면 컨설팅이 용이한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되,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의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 선발
- 학계, NGO, 유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직업군 선발
- 법·조경·도시계획·환경·건축 등 다양한 전공 분야 선발

제1장
정책방향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 (자격요건)

- ① 성평등 정책 및 도시정책(도시설계, 교통, 주택, 건축 등)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련 경력(교육·강의·연구 등)이 5년 이상인 자
- ②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 중앙 컨설턴트의 경우 ①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위촉절차 및 해촉기준)

- ◆ (위촉) 컨설턴트 선발 및 교육 실시 후 컨설턴트 위촉장 수여(여가부)
 -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위촉장 수여(서식 19)
 - * 변동사항은 발생 즉시 보고(중앙센터 → 여가부)
- ◆ (해촉)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를 해촉할 수 있음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출장거부 그 밖의 사유로 컨설턴트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컨설팅단 운영 및 관리

- (컨설턴트 배정 및 운영원칙)

- ◆ 중앙 컨설턴트는 지자체의 신청 내용과 컨설턴트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배정
- ◆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는 지자체별 컨설팅 수요와 지자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컨설팅 연속성을 위해 전년도 전담 지자체에 우선 배정
 - * 단,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의견에 따라 배정지역 조정 가능
- ◆ 중앙 컨설턴트는 사례별 현장방문(대면) 컨설팅을 1회 이상 실시 권장
- ◆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는 지자체별 현장방문(대면) 컨설팅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 모든 컨설턴트는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워크숍(상·하반기, 연 2회)에 연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양평원이 실시하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자 대상 워크숍(연 1회)에 참석 권장

- (컨설팅 수당 지원)

- ◆ (지원금액) 컨설팅단 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여가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중앙) 1회당 최대 15만원
 - (지자체 전담) 지정도시 1개소당 최대 50만원
-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반기별 지급 원칙이며, 컨설턴트 명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가 중도 해촉된 경우 컨설팅 실적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컨설팅 수당 월할 지급 (최대 지급액 기준)
- ◆ (지원금 반환 및 환수) 컨설팅 실적 허위 보고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지원받은 금액 회수

○ 사업관리 및 실적보고

- (중앙센터) 컨설팅 추진실적 분석, 컨설턴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컨설턴트간 협업 체계 지원
 - *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대상 컨설팅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실적보고) 분기별 컨설팅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여가부) 컨설팅 결과를 차년도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행점검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매년 정기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에 따른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점검하여 재지정 심사 시 참고하거나 컨설팅 연계
- (대상) 당해 연도 이행점검 대상 도시
 - * 여성친화도시 지정도시 중 재지정 대상 도시(5년차)를 제외한 지역
- (내용) 지자체별 이행점검 종합 검토의견을 통보하고, 미흡사례는 컨설팅과 연계, 이행점검 지표 개선 등 효과적 성과관리 방안 연구
- (기간) 이행점검 결과 분석(21.4분기), 이행점검 지표 연구(연중)

○ 사업 추진체계

- (여가부) 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안내, 이행점검 검토의견 통보 등 이행점검 관리 총괄
- (중앙센터) 지자체 이행점검 결과 분석, 컨설팅 연계, 이행점검 개선 방안 연구 등

○ 사업 내용 및 절차

- (이행점검 결과 분석) 지정도시 이행점검 제출 자료의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필요 시)을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별 사업성과 심층 분석, 지자체에 보완할 점을 명시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하고, 필요 시 컨설팅과 연계
 - * 지자체별 이행점검 분석서 작성 : 서식 20 참조

【분석 내용】

- ◆ 조성목표 ①(사업추진 기반 강화) 관련 정량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 산정
 - * 지정도시 연차별 평균 점수 및 지자체별 순위 산출 포함
- ◆ 조성목표 ②~⑤(대표사업) 관련 정성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검토·제안
- ◆ 검토의견 및 컨설팅 결과의 반영 여부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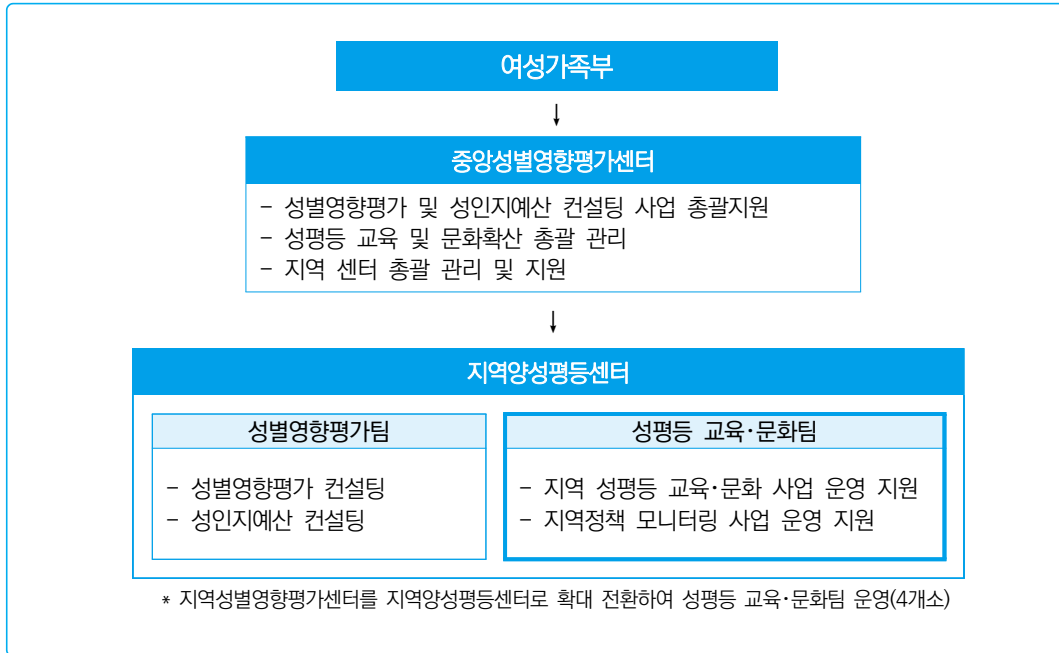
- (절차)

내 용
① (여가부) 이행점검 실시 계획 및 보고서 서식 통보(→ 지자체) : 매년 8월
↓
② (지자체) 이행점검 보고서 제출 : 매년 9월말까지
↓
③ (중앙센터) 이행점검 결과 심층 분석 및 결과 제출(→ 여가부) : 매년 12월말까지
↓
④ (여가부) 이행점검 검토의견 통보(→ 지자체) : 익년 2월 (중앙센터)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컨설팅 연계
↓
⑤ (지자체) 이행점검 분석 결과 및 컨설팅 결과 반영 : 차년도 이행점검 시 제출 (여가부) 이행점검 결과를 재지정 심사 시 참고

- (이행점검 지표 연구) 이행점검 성과지표 개발, 3단계 도시 발전방안 등 여성친화 도시 조성 사업 발전방안 연구

3-2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지역양성평등센터)

[사업 추진체계]



가.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①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운영

○ 목 적 :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성평등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의식 문화 확산

○ 교육 대상 : 지역 주민

- (공공서비스 전달 기관 종사자) 지역 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고용센터 종사자 등
- (교육 기관 종사자)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교사 및 교직원, 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 (청소년 및 학부모) 초·중·고·대학생 및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 청소년, 학교 참여 및 건가·다가센터 이용 학부모
- (언론 종사자 및 지역주민) 시·도 및 시·군·구 종사자 및 지역 주민
- (경찰) 시·도 및 시·군·구 경찰 대상

제1장
정책방향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사업 운영
지역양성평등센터 운영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공공서비스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 사업 내용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광역·기초 지자체, 시·도 교육청, 지방 공기업 등 공공 서비스 전달 기관, 초·중·고·대학교, 지역 내 시설 협회, 언론 등과의 연계 활성화
 - * ① 매년 교육 대상자 중 대표집단(연중 교육 목표인원 중 80% 이상)을 필수 설정
 - ② 연중 목표인원 중 20% 범위 내에서 대상 집단 자율적으로 선정 가능
- (강사관리) 성평등 교육 강사 풀 관리 및 교육 연계
- (교육콘텐츠 개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 *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 권장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온 : <http://genderon.kigepe.or.kr>)
- (교육실시) 지역 내 수요 기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센터 별 성과지표* 달성 관리
 - * 대표집단에 대한 교육 확산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관리 필요
(예시 : 지역 내 전체 중학생 중 〇〇% 교육 실시, 지역 내 〇〇개 어린이집 중 〇〇개 대상 교육 실시, 지역 내 보육교사 대상 분기별 〇〇회 교육 실시 등)

○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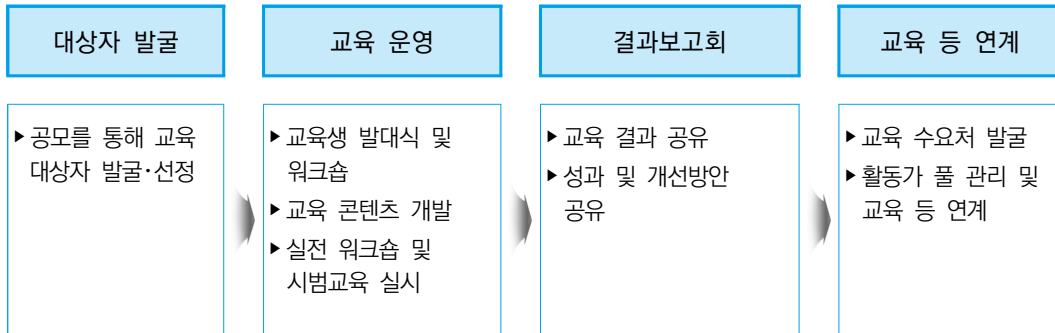
- 기초 지자체 당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
- 교육콘텐츠를 개발한 경우,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 강사 등에 일정의 원고료 지급이 가능하며, 개발된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은 양성평등센터 및 여가부가 소유
- 센터는 개발된 콘텐츠를 강의 수행 시기에 맞춰 관련 법규,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교육생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리 감독에 노력
- 개발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감수·자문 등을 구할 필요

○ 참고 사항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시,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전국 18개소)에 필요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할 시, 강사에 의한 교육(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을 무료로 지원 가능
 - * 교육신청 방법 : 상시접수(교육 실시 14일 전 신청 필요)
 - ☎ 대표전화(1661-6005) 및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shp.mogef.go.kr)에서 신청 가능

②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 교육 운영

- 목 적 : 지역 내 양성평등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양성평등 정책 역량개발에 기여
- 교육 대상 : 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유관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강의 등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
- 사업 내용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공모를 통해 교육 대상자 발굴 및 선정,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 수요처 발굴·관리
 - (지원내용) 교육생 워크숍, 교육 콘텐츠 개발, 시범 교육 실시, 결과보고회 등



- (성과관리) 센터 별 성과지표 달성 관리

* 양성된 활동가의 실제 교육 등 연계여부를 성과지표로 설정·관리

○ 유의 사항

- 교육 콘텐츠 개발 시, 교육 시수,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자문 가능
- 교육 콘텐츠 개발 시에는 실제 지원할 교육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 콘텐츠 활용도를 감안하여 개발할 필요

제1장
일반

제2장
예산·회계

제3장
운영·홍보

제4장
성과관리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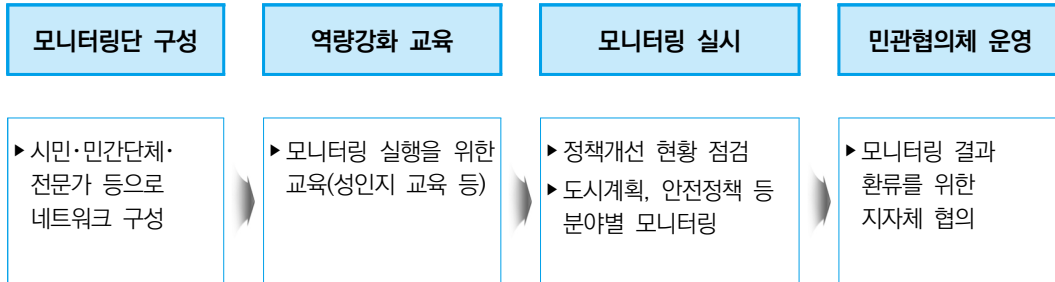
③ 성평등 홍보 및 캠페인

- 참여 대상 : 지역 내 성평등 이슈, 정책 등에 관심 있는 청년, 지역주민 등
- 사업 내용
 - 주민 참여형 캠페인, 홍보사업 전개 등을 통해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지역주민·전문가·민간단체·정책 관계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형식의 릴레이 논의 포럼, 토론회 등 개최
 - 특정 주제로 온·오프라인 여론의 장을 활용한 융합형 캠페인 진행
 -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내 성평등 광고 기획 및 제작
- 유의사항
 -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나. 지역정책 모니터링

-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이 성인지 관점에서 지역정책을 평가·모니터링 함으로써 지자체 성평등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 (모니터링 대상 선정)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 등을 주제로 선정
 - *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 및 과제,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과제 중 이행 점검이 필요한 과제 등
 - ** ① 모든 지역정책(고용정책, 도시계획(가로 조성, 공원 조성), 사회복지서비스 등),
② 언론·미디어(지역 내 홍보물) 등
 - (모니터링단 구성) 활동가, 시민 및 전문가 등으로 다양한 연령,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 (역량강화 교육) 비전문가인 시민·활동가가 모니터링 대상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연 2회 이상)
 - * (교육내용) 성인지교육, 성주류화 제도 교육, 성평등 도시정책·안전정책 등
 - (모니터링 실시) 주제별 분과 모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
 - * 주제별 분과 모임 개최 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모니터링 과정 전반에 자문, 상담 등 업무 수행 권장

- (민·관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운영



- 유의사항 : 모니터링 활동 결과가 지역 정책에 반드시 환류될 수 있도록 할 것
- 예산 집행 기준 : 모니터링단 참석 또는 모니터링 건 별로 수당 집행이 가능하며 1회(1건) 당 10만원 이하

다. 거점형 지역 양성평등센터 시범 운영

- 사업 목적
 - 지역 특색을 고려한 양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
- 추진방향
 -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운영 및 광역-기초 간 상호협력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광역 및 기초단위까지 포괄하는 지역 거점 역할 수행
- 사업 내용
 - (성주류화 제도 지원) 기초단위까지 확산된 다양한 분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양성평등 주요 지표 관리 및 공공부문 조직 문화 진단·개선, 양성평등 교육·양성평등 수준진단 및 성인지 정책 개선사항 발굴 등
 - (양성평등 의식·문화 사업) 조직문화 개선 매뉴얼 등 양성평등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지역 기반 양성평등 교육 실시, 주민 참여형 홍보사업
 -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홍보사업 및 매체 모니터링 활동 등 주민 참여 정책 모니터링 확장

제1장
일반

제2장
사회의 안전과
복지

제3장
생태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

제4장
성별영양
및 건강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출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 기타(지역 특성화 사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선 제안, 실천 활동 등
탄력적 정책 이슈 대응
 - * 성주류화 제도 지원 : 기존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 사업 대상
 - 광역 지자체 2개소(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위탁 운영)
 - * '19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양성평등센터(4개소, 경기·인천·전남·경북) 운영 지역 제외
- 사업 예산(지자체보조사업)
 - 386백만원(국비 193+지방비 193). 380백만원(국비 190+지방비 190)

예산의 지원 및 관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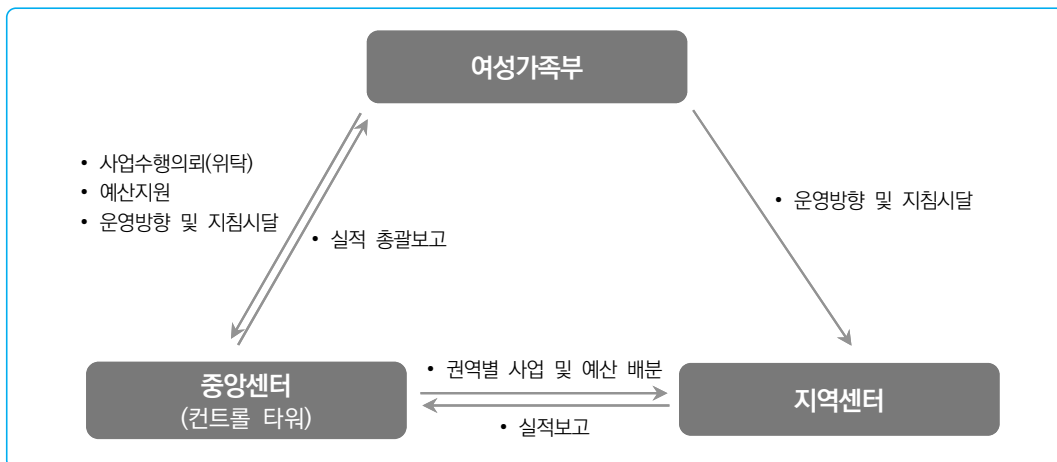
예산의 지원 및 집행기준

가.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 * 본 지침 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규정에 따름

나. 지원 기준

- 총 사업비 : 2,971백만원
 - 지원방법 :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에 일괄 위탁 후 중앙센터에서 지역센터에 예산 배분



- 성별영향평가센터(국비 100%) : 2,474백만원
 - 중앙센터 운영비 : 456백만원
 - 지역센터 운영비(16개소) : 2,018백만원
 - * 유형별 지원 예산(관할기관수(80%),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인원(20%)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가형(4개소) 135백만원, 나형(8개소) 125백만원, 다형(4개소) 116백만원
- 지역 양성평등센터(국비 100%) : 497백만원
 - 중앙센터 운영비 : 20백만원
 - 지역센터 운영비(4개소) : 477백만원
 - ※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시범운영) : 383백만원(1개소 193백만원, 1개소 190백만원), 지자체 보조 50%, 별도예산

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센터 운영사업은 여성가족부 정책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위탁사업이므로, 사업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즉,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사업비에만 지출이 가능함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 센터는 예산 배정이 지연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 비용을 선지출하고 후에 정산할 수 있음(관련 증빙서류 비치)
 - * 단, 계약체결일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소급하여 보전할 수 없음
- 사업비는 사업목적을 위한 직접경비로 한정하며, 집행미숙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사업비에 대한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는 일치하여야 함
- 10만원 이상의 각종대가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반드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지출은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회계장부에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함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처리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출결의서 다음 장에 첨부하여야 함
- 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가 없을 경우 일정한 카드를 지정하여 사용함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사업비 1만원 이상 집행 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 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1만원 이상 집행 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 다만 개인신고 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 강사비, 원고료, 발표료, 회의비, 사례비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아래 서식에 의거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지급내역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납부한 후 영수증 첨부하여야 함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8%, 지방소득세(주민세) 0.8% 공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8.04.01.)에 따라 필요 경비를 조정)

성 명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입금계좌	지급내역			
				지급액	기타 소득세	지방 소득세 (주민세)	실지급액

- 사업비 지출은 기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해서는 안됨. 단,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예산비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성가족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지역센터장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앙센터장에게 예산변경 신청을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함
- 예산변경 신청 시,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증액 불가함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불가함
 - * 예산변경 신청 시, 변경 전·후 금액, 세부 산출근거, 변경사유 등 적시 : [서식 10]

제1장 예산의 일반원칙
 제2장 예산의 편성
 제3장 예산의 집행
 제4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제5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제7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2 예산의 세부 산정기준

가. 전문인력 인건비

구 분		지 급 기 준	지원여부
중앙센터	전문인력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급 1인당 월 3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수당 : 연간 27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 	지원
지역센터	전문인력 3인	성별영향평가팀(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연구원급 1인당 월 3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수당 : 연간 27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 	지원
		성평등 교육·문화팀(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연구원급 1인당 월 29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수당 : 연간 27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 	지원
거점형 지역 양성평등 센터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연구원급 1인당 월 41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수당 : 연간 27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 	지원
	전문인력 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연구원급 1인당 월 29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수당 : 연간 27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 	

- 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연구기관 내부 직급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와 사전협의
- * 인건비 포함내역(위 지급기준 상한액 내) : 전문인력 봉급, 제수당, 본인부담 4대 보험료
- * 퇴직급여충당금은 적립 후 별도 관리하고 4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기관에서 부담하되 불가피한 경우 여성가족부와 사전협의 후 일반관리비에서 총당

나. 경 비

○ 여비

-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여비 집행 기준은 지정 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 전문인력에 대한 여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함. 단, 위탁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출장일 경우, 센터 직원 및 컨설턴트에게도 여비 지급 가능함
- (양성평등센터) 정책 모니터링 사업으로 참석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여비 중 시외 여비 운임실비만 지급 가능

○ 유인물비

- 계약목적에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는 정부인쇄기준요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며, 1백만원 이상의 인쇄비는 인쇄업체가 작성한 원가계산내역을 첨부

구분	산정기준		비고
보고서	50부 미만 (본문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지 및 제본 : 15,370원 × 20 × 1.1 본문 : 페이지 수 × 60원 × 부수 × 1.1 	지역센터는 결과보고서 (별책 포함) 인쇄비만 계상 ※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의 착수·중간·결과보고서 인쇄비 포함 계상
	50부 이상 (경인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지 : (15,370원 + 10부마다 183원) × 20 × 1.1 본문 : (5,800원 + 10부마다 101원) × 페이지 수 × 1.1 	
자료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원 이내 × 매수 × 1.1 		

○ 전산처리비 : 전산용지 및 전산소모품 등 연간 80만원 이내

○ 원고료 등 지급기준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4 용지 1면(20,000원) 200자 원고지 1매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원고료는 건당 최대 30만원을 넘지 않음
파워포인트	포럼을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컨설팅비 지급기준

- 사업, 계획, 홍보물 과제당 6만원(법령 및 성인지예결산은 상한액 4만원)을 지급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
-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의 경우 중앙 컨설턴트에게는 원칙적으로 1회당 최대 15만원,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는 지정도시 1개소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
 -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지급액 125,000원 초과시 기타 소득세 8%, 지방소득세(주민세) 0.8% 공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8.04.01.)에 따라 필요경비를 조정)
 -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지급총액의 3% 세율(주민세 별도) 적용
 - * 세무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여성가족부 지원예산으로 인건비가 편성된 인력(전문인력)은 컨설팅 수당 지급 불가

○ 회의비(포럼, 전문가 자문, 교육 등) 지급기준

- 외부 참석자에 대하여만 지출 가능(사업운영주체 직원에 대하여 지출 불가)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까지 : 150,000원 ○ 2시간까지 : 200,000원 ○ 2시간초과 : 300,000원 	* 관할 업무담당 공무원 제외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까지 : 150,000원 ○ 2시간까지 : 200,000원 ○ 2시간초과 : 300,000원 	*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회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과비 : 5,000원 × 참석자 수 ○ 식 비 : 20,000원 × 참석자 수 	* 외부인사 참여 시에만 집행 가능 (원내 연구진 회의 시에는 사용 불가)

- 전문가(주제발표자, 외부인사 등) 여비보상금 지급 기준

-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의 왕복교통비
- 민간단체의 임·직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지급기준 적용 가능
- * 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비, 식비 지급 불가

- 서면으로 전문가 등의 자문을 하는 경우 10만원(1회기준) 이내에서 지급

○ 교육관련 경비

- 양성평등센터 사업 중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 지역
정책모니터링 중 역량강화 교육,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중 컨설턴트 역량강화
사업에 한함
- 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 수령 불가
- 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 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식비 : 10,000원/식
- ※ 식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 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 강사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특강	최초 1시간	3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3.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4. 국책연구기관장 5.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초과 (매시간)	200,000원	
일반 I	최초 1시간	250,000원	1. 대학(원)의 교수(급) 2. 국장(급) 공무원 3.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4. 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자 5.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100,000원	
일반 II	최초 1시간	20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3. 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50,000원	
보조강사	1시간당	50,000원	1.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따워포인트, 차트 등) 조작은 제외

※ 강의시간 :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강의비 총액한도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사 예비보상금 지급 기준은 전문가(주제발표자, 외부인사 등) 예비보상금 지급 기준(54p)을 준용

○ 임차료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함
-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함

○ 교통통신비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구분	적용기준	비고
1) 시내교통비	○ 4시간 미만 : 1인 1일당 10,000원 ○ 4시간 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 연간 50만원 이내	
3) 우편료	○ 연간 50만원 이내	

○ 홍보비

- 신문·방송 및 온라인 등 광고비, 캠페인·홍보 물품 제작 및 발송, 심사 등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홍보성 경비

* 캠페인 물품의 경우, 목적 및 대상이 불분명할 시 집행이 불가하며, 성평등 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 성별영향평가센터의 경우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집행

○ 외부용역 및 부담금 : 외부 단체 및 기관에 재위탁 불가

○ 그 외 비목은 여성가족부 및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와 협의하여 신설 가능

다.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6% 이내 계상

- 조달수수료,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자산가치가 있는 비품 구입 불가)

3 예산의 관리 및 보고

가. 사업비의 정산 및 실적보고

○ 해당연도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완료

- 정산 기준일 :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 나라장터 검사요청
 -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 대금청구

* 결산 및 정산내역 보고 : [서식 11]

○ 실적보고

- 각 지역센터장은 회계 연도 종료 전 결과보고서 [서식 6]을 작성하여 중앙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센터장은 각 지역센터의 결과보고서를 종합한 실적보고서와 예산집행 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보고받은 사업의 실적(결과보고서), 예산집행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부록

【서식 01】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57
【서식 02】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서	• 59
【서식 03】	성별영향평가센터 폐·휴지 신고서	• 60
【서식 04】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서	• 61
【서식 05】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착수보고서	• 63
【서식 06】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중간·결과보고서	• 70
【서식 07】	컨설팅 결과보고서	• 82
【서식 08】	컨설턴트 위촉장	• 87
【서식 09】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서식	• 88
【서식 10】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예산 변경 작성서식	• 90
【서식 11】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결산 및 정산 내역 보고	• 91
【서식 12】	2022년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실적보고 양식(분기, 최종)	• 95
【서식 13】	2022년도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실적보고 양식(분기, 최종)	• 101
【서식 14】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신청 양식(공간분야 및 신규·재지정 (제)준비)	• 115
【서식 15】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의견서(중앙 컨설턴트 → 지자체)	• 116
【서식 16】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수행일지(컨설턴트 작성)	• 117
【서식 17】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총괄보고서(컨설턴트 작성용)	• 118
【서식 18】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종합결과보고서(중앙센터 작성용)	• 120
【서식 19】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위촉장	• 123
【서식 20】	여성친화도시 지자체별 이행점검 분석서(중앙센터 작성)	• 124
【참고 01】	관련 법령	• 125

붙임

성별영향평가기관 업무수행계획

1. 센터현황

- 인원

성명	직위	학력	주요경력	연구경력

- 조직

2. 센터 운영실적 (*별지사용 제출 가능)

- 컨설팅 등 지원 및 자문실적

구분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	비고

- 행사실적 등

구분	행사명	행사기간	주요내용	비고

3. 운영계획 (*별지사용 제출 가능)

- 컨설팅 등 지원 및 자문계획

구분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	비고

- 행사계획 등

구분	행사명	행사기간	주요내용	비고

서식 2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서식

제 호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서

명 칭 : 여성가족부 지정 중앙(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센 터 장 :

소 재 지 :

기 관 명 :

지정기간 : 20 ~ 20

위 기관을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의한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함.

년 월 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인

제1장
일반규칙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서식 4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서 서식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서

1. 기관현황

○ 인 원

구 분	성 명	직 책	담 당 사 무	비 고
센터장				
직원				

○ 예 산

연 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결산 포함) 관련 예산

○ 시 설

시 설 명	면적(m ²)	시 설 명	면적(m ²)
자료실		기타	
상담실			

2. 운영실적 및 계획

○ 컨설팅 실적 및 계획

구 분		컨설팅 과제수	컨설턴트 인원
실적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계획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1장
포괄개요제2장
사업 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 교육 실적 및 계획

구 분	교육대상	교육횟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실적			
계획			

○ 지역 거버넌스 구축(포럼 등) 실적 및 계획

구 분	일 시	참석대상	주 제(내용)
실적			
계획			

○ 연구실적 및 계획

구 분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내용	비 고
실적				
계획				

○ 기타(모니터링 등)

※ 필요한 경우 칸을 늘릴 수 있음. 운영실적과 계획은 별지사용 제출 가능

서식 5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착수보고서 서식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착수보고서

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의 착수보고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김 이 름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제1장
정비관리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착수보고서

1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2. 조직 및 인력현황

(※ 센터 조직도, 내·외부 인력현황, 추진체계 등 작성)

- 센터 조직 및 인력현황
 -
 -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
 -

2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위탁사업 내용 및 간단한 개요 작성)

-
-
-

2. 사업 내용

-
-

3. 사업 추진일정 (※ 실제 운영일정)

-
-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4. 사업 운영절차 (※ 그림, 도표 등으로 도식화)

-
-

제1장
공개편사
영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비행 임차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3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계획

(※ 2장 사업 내용에 준하여 자세히 작성)

1.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 계획, 기대효과)

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 목 적

-

○ 개 요

- 컨설팅 대상 :

- 컨설팅 시기 :

- 컨설팅 내용 :

○ 컨설턴트 현황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담당기관	비고
1		○○대학교	교수	○○구	
2					

나.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 목 적

-

○ 개 요

- 컨설팅 대상 :

- 컨설팅 시기 :

- 컨설팅 내용 :

○ 컨설턴트 현황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담당기관	비고
1		○○대학교	교수	○○구	
2					

다.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 개요

- 교육 대상 :
- 교육시기 및 횟수 :
- 교육 내용 :

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

- 추진배경 및 목적
- 일시 및 장소
- 참석대상자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일정(※ 표로 정리)

3. 2021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및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

(사업 실적,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

○ 개요

- 대상 :
- 시기 :
- 내용 :

4.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점검

○ 개요

-

-

○ 현황

-

-

대상구분 (이행점검 대상 과제 수)		1) 이행점검 대상(과제수)		
		합계 (과제수) (A + B)	개선의견 수용과제수 (A)	자체의견 과제수(B)
합계				
법령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	소계			
	2019			
	2020			
사업	소계			
	2019			
	2020			

○ 내용

-

-

5. 성별영향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현안지원

(사업 개요, 사업 실적,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

6. 기타 사업(※ 위에 서술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사업 개요 / 계획, 사업 실적, 성과)

가. 양성평등 특성화 사업 및 연구

1) 성주류화 연구

○

-

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매뉴얼 제작, 토론회, 워크숍 등)

○

-

3) 홍보(정책개선 사례집 발간, 공모전, 블로그 운영 등)

○

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 지원(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위탁사업, 기관자체사업 등)

○ 개요

-

-

○ 내용

-

다. 전문인력 채용

○

제1장
정책분야

제2장
사업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제4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제5장
세부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서식 6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중간·결과보고서 서식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중간·결과보고서

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의 (중간)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김 이 름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중간·결과보고서

1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2. 조직 및 인력현황

(※ 센터 조직도, 내·외부 인력현황, 추진체계 등 작성)

- 센터 조직 및 인력현황
 -
 -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
 -

제1장
정책방향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2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위탁사업 내용 및 간단한 개요 작성)

○

-

-

2. 사업 내용

○

-

-

3. 사업 추진일정 (※ 실제 운영일정)

○

-

-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4. 사업 운영절차 (※ 그림, 도표 등으로 도식화)

○

-

-

3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적

(※ 2장 사업 내용에 준하여 자세히 작성)

1.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계획, 사업 실적, 성과)

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홍보물 컨설팅 포함)

○ 목 적

-

○ 개 요

- 컨설팅 대상 :
- 컨설팅 시기 :
- 컨설팅 내용 :

○ 컨설턴트 현황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담당기관	위촉 년월	교육 현황		
						양성	보수	심화
1		○○대학교	교수	○○구				
2								

○ 실 적

구 분	대상구분 (컨설팅 과제수)	1)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회)					2)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회)	
		합계(회) (A+B+C+D)	대상과제 선정(A)	성별영향 평가서 작성(B)	검토의견 (C)	기타(D) (종합결과보고서 검토 등)	대면	서면(GIA시스템, 메일 등) 및 전화
	소개							
	법령							
	계획							
	사업							
	기관							
	홍보물							

제1장
요약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나. 성인지 예산제도 컨설팅

○ 목 적

-

○ 개 요

- 컨설팅 대상 :

- 컨설팅 시기 :

- 컨설팅 내용 :

○ 컨설턴트 현황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담당기관	위촉 년월	교육 현황		
						양성	보수	심화
1		○○대학교	교수	○○구				
2								

○ 실 적

구 분		1)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회)				2)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회)	
		합계(회) (A + B + C)	대상과제 선정(A)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B)	기타 (C)	대면	서면 (GIA시스템, 메일 등) 및 전화
소 계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							
기관							

다. 컨설턴트 교육

1)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 개요

- 교육대상 :
- 교육시기 및 횟수 :
- 교육내용 :

○ 실적 및 성과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컨설턴트 교육과정(양성 심화)

연번	교육과정명	일자	참석인원(명)				비고
			계	전담	원내	원외	
1							
2							

3) 자체 컨설턴트 교육(센터 자체교육)

○ 개요

- 교육대상 :
- 교육시기 및 횟수 :
- 교육내용 :

○ 실적 및 성과

라. 컨설팅 모범사례

(‘21년 법령·계획·사업 및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컨설팅 모범사례 각 1건 이상을 구체적으로 기술)

1) 법령 컨설팅 모범사례

□ 과제명 :

○ 개선의견 :

개정 전	개정 후

○ 의의 :

2) 계획 컨설팅 모범사례

□ 과 제 명 :

○ 개선의견 :

평가 전	평가 후

○ 의의 :

3) 사업 컨설팅 모범사례

□ 과 제 명 :

○ 개선의견 :

평가 전	평가 후

○ 의의 :

-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결과보고서(별책)
- 컨설팅 지원실적(통계), 컨설턴트 활동일지 등

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

(사업 개요/ 계획, 프로그램, 주제, 참석자, 사업 실적, 성과)

- 추진배경 및 목적
-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일정 (※ 표로 정리)
- 추진성과

3. 2021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및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 (사업 실적,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

가. 개 요

○

나. 주요 추진 실적

○

-

다. 정책개선 모범사례

1) 법령 정책개선 모범사례

□ 과 제 명 :

○ 개선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 의의 :

2) 계획 정책개선 모범사례

□ 과 제 명 :

○ 개선내용 :

평가 전	평가 후

○ 의의 :

제1장
요약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사업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사업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3) 사업 정책개선 모범사례

□ 과 제 명 :

○ 개선내용 :

평가 전	평가 후

○ 의의 :

4.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점검

○ 개요

-

○ 현황 *별도 제출 파일로 같음 가능

대상구분 (이행점검 대상 과제 수)	1) 이행점검 대상(과제수)			2) 이행점검 현황(과제수)						
	합계 (과제수) (A+B)	개선의견 수용 과제수 (A)	자체의견 과제수 (B)	개선의견 수용 과제			자체개선 과제			
				완료 (C)	미이행 (D)	기타 (E)	완료 (F)	미이행 (G)	기타 (H)	
합계										
법령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	소계									
	2019									
	2020									
사업	소계									
	2019									
	2020									

○ 실적 및 성과

5. 성별영향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현안지원

(사업 개요, 사업 실적,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

○

6. 기타 사업(※ 위에 서술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사업 개요/ 계획, 사업 실적, 성과)

가. 양성평등 특성화 사업 및 연구

1) 성주류화 연구

○

-

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매뉴얼 제작, 토론회, 워크숍 등)

○

-

3) 홍보(정책개선 사례집 발간, 공모전, 블로그 운영 등)

○

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 지원(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위탁사업, 기관자체사업 등)

○ 개요

-

○ 내용

-

○ 실적 및 성과

다. 전문인력 채용

○

제1장
정책분야제2장
사업 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별첨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요령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요령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4 성별영향평가센터 주요성과 및 점검

1. 주요 운영 성과

(※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주요 성과와 잘된 점 등을 도출,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

2. 센터 운영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5 성별영향평가센터 향후계획

(※ '22년 세부 운영 계획, 사업결과 활용 방안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중간보고 시에는 '22년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작성)

1. 사업결과 활용 방안

○

-

2. '22년 하반기 운영계획(중간보고 시)/'23년 세부 운영 계획(결과보고 시)

가. 센터 운영

○

-

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

다.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컨설팅

○

-

라.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

-

마. 기타(지역 성별통계 관리, 포럼, 연구 등)

○

-

제1장
정책개발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서식 7 컨설팅 결과보고서 서식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서

20 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 업 명 :
컨설팅 총 비용 :
컨설팅 기간 :

첨 부 : 완료(결과)보고서 및 컨설팅일지 10부 및 원본파일 1부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1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1. 컨설팅의 목적 및 필요성

2. 컨설팅 대상 기관 및 과제 수

(단위: 건, %)

연번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전년도 컨설팅 과제수(A)	컨설팅 과제수 (B)	증감률 {(B-A)/A} × 100)	전년도 컨설팅 과제수(A)	컨설팅 과제수 (B)	증감률 {(B-A)/A} × 100)
계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실적(통계), 컨설턴트 활동일지 붙임으로 첨부

2 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1. 컨설팅 추진체계(※ 그림, 도표 등으로 도식화)

2. 컨설팅 내용 및 실적

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 개요

- 컨설팅 대상 :
- 컨설팅 시기 :
- 컨설팅 내용 :

○ 컨설턴트 현황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담당기관	위촉 년월	교육 현황		
						양성	보수	심화
1		○○대학교	교수	○○구				
2								

○ 실적(※ 법령·계획·사업별·홍보를 자세히 작성)

제1장
요약제2장
사업 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제도
내부 지침 제정 절차제4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공표 내역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나. 성인지 예산제도 컨설팅

○ 목 적

-

○ 개 요

- 컨설팅 대상 :
- 컨설팅 시기 :
- 컨설팅 내용 :

○ 컨설턴트 현황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담당기관	위촉 년월	교육 현황		
						양성	보수	심화
1		○○대학교	교수	○○구				
2								

○ 실적(※ 예산·결산별 자세히 작성)

3 컨설팅 사업 성과 및 점검

1. 컨설팅 사업의 운영 성과

2. 컨설팅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행과정의 애로 / 건의사항 등 포함하여 기술)

[붙임 1]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실적 보고

○ 총괄지원실적

구 분	1)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회)					2)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회)		
	대상구분 (컨설팅 과제수)	합계(회) (A+B+C+D)	대상과제 선정 (A)	성별영향 평가서 작성 (B)	검토의견 (C)	기타(D) (종합분석보고서 검토등)	대면	서면 (GIA시스템, 메일, 전화 등)
총 계								
성별 영향 평가	소개							
	법령							
	계획							
	사업							
	홍보물							
	기관							
성인지 예결산	소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							
	기관							

* 1) 컨설팅 부문별 지원실적 횟수 합계와 2) 컨설팅 방법별 지원실적 횟수 합계는 동일해야 함

○ 과제별 정책개선의견 제시 실적(성별영향평가서 성평등 조치사항 및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의견 제시 등)

구 분	법 령	계 획	사 업	총 계
총 계	건	건	건	건
정책개선의견	건	건	건	건

* 1개 과제당 여러 단계에서 여러번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더라도 1건으로 계산(과제수 기준으로 작성)

제1장
정책방향제2장
사업 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붙임 2]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수행일지

□ 법령·계획·사업·홍보물·기관·성인지예산·성인지결산별로 나누어 기재

기관명		컨설턴트										
연번	기관명	부서명	대상 구분	대상 과제명	시스템/시스템외	컨설팅 방법	컨설팅 부문	컨설팅 일자 (완료일)	컨설팅 내용	컨설턴트명	컨설턴트 구분 (내부/외부)	

서식 8 컨설턴트 위촉장 서식

위 촉 장

부 문 : 성별영향평가

홍길동

귀하를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
턴트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000.0.00)

0000년 0월 00일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 (위촉장 명의) 센터장 또는 각 센터가 소속된 연구기관 등의 장 명의 기재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계약조건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항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서식 9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서식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정책개선 이행점검 실적 보고

○ 이행점검 총괄지원실적

대상구분 (이행점검 대상 과제 수)	1) 이행점검 대상(과제수)			2) 이행점검 현황(과제수)						
	합계 (과제수) (A + B)	개선의견 수용과제수 (A)	자체의견 과제수(B)	개선의견 수용 과제			자체개선 과제			
				완료(C)	미이행 (D)	기타 (E)	완료(F)	미이행 (G)	기타 (H)	
합계										
법령	소계									
	2012	지	미							
	2013	역	해							
	2014	센	당							
	2015	터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	소계									
	2019									
	2020									
사업	소계									
	2019									
	2020									

* 1) 이행점검 대상 과제수 합계와 2) 이행점검 현황 과제수 합계는 동일해야함.

* 연도는 법령, 계획,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실시 연도를 의미함.

○ 대상과제별 이행점검 지원실적

연번	평가연도	대상구분	개선유형	기관명	관리번호	대상과제명	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 내용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정책개선 이행점검		
								개선안 (과제별)	개선 실적 (과제별)	이행 점검 현황 (완료, 미이행 기타)	이행점검 내용 (과제별)	증빙 자료
1	2019	법령 or 계획 or 사업	개선 의견 or 자체 개선	기획재정부	2019A기재07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기관 : '해당기업' 여성 의 조항 완 퇴직이 후 적용 기간을 10년 미만 · 경력단절 여성에 한해 '재고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경력 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시 · 대상 기관 : '해당기업' 여성 의 조항 완 퇴직이 후 적용 기간을 10년 미만 · 경력단절 여성에 한해 '재고용'	○조세특례제한법 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30조제1항 개정 ('19.12월)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 16835호, 2019. 12. 31, 일 부개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 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 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	2021-2019 A기재 079-개선이행01-증빙 01-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정책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제4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서식 10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예산 변경 작성서식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예산 변경

(단위 : 원)

비 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사유
	금액	세부 산출근거	금액	세부 산출근거		
총 계						
1. 인건비	소 계					
	연구원	단가×1인×월×참여율 %	단가×1인×월×참여율 %			
2. 여 비	소 계					
	일비	단가×인×일 =	단가×인×일 =			
	식비					
	숙박비					
3. 외부용역비						
4. 유인물비		교재제작 단가×부 = 보고서회의자료	교재제작 단가×부 = 보고서회의자료			
5. 회의비						
6. 조사비		컨설팅수당 단가×부 =				
7. 전산처리비						
8. 임차료						
9. 교통통신비						
10. 교육 관련 경비						
11. 홍보비						
12. 일반 관리비						

서식 11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결산 및 정산 내역 보고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결산 및 정산 내역 보고

※ 지역 양성평등센터 사업도 동일 양식 사용

1. 사업명 :

2. 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목적

-

 필요성

-

 사업기간 : 20 . . . ~ 20 . 12. 31 주요사업 내용

-

3. 예산집행내역(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계약액	집행금액	정산잔액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합 계			

상기와 같이 사업비를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 성별영향평가센터장 또는 기관장(인)

제1장
포괄평가제2장
사업 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1. 대금 청구서

□ 대금청구내역

계약번호		계약일자	2022년 월 일
사업부서	성별영향평가과		
계약명			
계약금액	금일천일백일십일만원(W0)		
정산(계약)금액	금일천일백일십일만원(W0)		
선금청산액	금일천일백일십일만원(W0)		
청구금액	금일천일백일십일만원(W0)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된 용역을 완료하여 대금청구하오니 아래 결제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거래은행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기관명 :

주 소 :

대 표 :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2. 선금사용 내역서

- 사 업 명 :
- 계약 기간 :
- 계약 금액 :
- 선금신청액 :
- 선금집행액 :
- 선금집행잔액 :

(단위 : 원)

항목	선금사용계획	선금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내역	비고
	40,000,000	38,400,000	1,600,000		
인건비	20,000,000 12,000,000 8,000,000	20,000,000 12,000,000 6,400,000	1,600,000	2,000,000원×2인×5개월 1,200,000원×2인×5개월 800,000원×2인×4개월	
여비	:	: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조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일반관리비					
계					

제1장
정책방향제2장
사업 추진 계획제3장
생활영향평가내역 지정 절차제4장
생활영향평가내역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3. 사업비 집행내역서

- 사 업 명 :
- 계약 기간 :
- 계약 금액 : 원
- 정산확정액 : 원
- 정산 잔액 : 원

(단위 : 원)

항목	계약액*	집행금액	정산잔액	집행내역	비고
인건비 ※ 항목별 작성	40,000,000	38,400,000	1,6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원×2인×5개월	
	12,000,000	12,000,000		1,200,000원×2인×5개월	
	8,000,000	6,400,000	1,600,000	800,000원×2인×4개월	
여비	:	: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조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비					
:					
일반관리비					
계					

* 계약액은 예산집행계획상의 예산임(예산변경 요청한 경우 예산변경 승인된 금액 명시)

2022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서식 12 2022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실적보고 양식(분기, 최종)

2022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실적보고

2022. . .

○ ○ ○ ○ (기관명)

제1장
정책방향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I. 사업추진 계획

< 사업 계획 총괄표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	주요내용	추진일정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①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 ·	
	②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		· ·	
	③ 성평등 홍보 및 캠페인		· ·	
지역정책 모니터링			· ·	
			· ·	
			· ·	

II. 사업추진 실적

※ 사업계획 총괄표에 포함된 각 사업별 실적을 작성

1.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1. (사업명)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① 사업예산													
② 사업 추진계획	○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 홍보계획 등												
③ 사업 추진실적	○ - - ○ -												
	교육명(행사명)	일시/장소	참석(명)		교육시간	주요내용							
			남	여									
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필수지표) 교육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예시) 지역 내 전체 중학생 중 00% 교육 실시												

제1장
요약

제2장
사업 추진계획

제3장
성평등영양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평등영양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2. (사업명)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 교육

1] 사업예산

2] 사업
추진계획

○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기 시행중인 유사 사업사례와 차별성

○ 홍보계획 등

3] 사업
추진실적

○
-
-

교육명(행사명)	일시/장소	참석(명)		교육시간	주요내용
		남	여		

4]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예시) 교육 연계율			

3. (사업명) 성평등 홍보 및 캠페인

① 사업예산																																																																	
② 사업 추진계획	<p>○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사업내용</th> <th colspan="12">추진일정 (월별)</th> </tr> <tr>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 -</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body> </table> <p>○ 기 시행중인 유사 사업사례와 차별성</p> <p>○ 홍보계획 등</p>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③ 사업 추진실적	<p>○ 캠페인 운영 실적 (사진 등 첨부)</p> <p>○ 토론회 등 개최 현황</p>																																																																
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성과지표명</th> <th style="width: 25%;">목표치</th> <th style="width: 25%;">실적치</th> <th style="width: 25%;">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제1장
요약

제2장
사업 추진계획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2. 지역정책 모니터링

1. (사업명)																																																																	
① 사업예산																																																																	
② 사업 추진계획	<p>○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사업내용</th> <th colspan="12">추진일정 (월별)</th> </tr> <tr>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 -</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p>○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p> <p>○ 홍보계획 등</p>																																																																
③ 사업 추진실적	<p>○ - -</p> <p>○ 모니터링단 구성현황</p> <p><분야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이름</th><th>연령</th><th>성별</th><th>소속</th><th>직위</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p><분야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이름</th><th>연령</th><th>성별</th><th>소속</th><th>직위</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이름	연령	성별	소속	직위																이름	연령	성별	소속	직위																																							
	이름	연령	성별	소속	직위																																																												
이름	연령	성별	소속	직위																																																													
	<p>○ 정책개선과제 도출 현황</p> <p>○ 민관협의체 개최 결과</p>																																																																
④ 성과 지표 달성 현황	<p>※ 정책개선 이행률, 모니터링단 만족도, 민관협의체 개최 건수(이행협의 실적 등) 등 포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성과지표명</th><th>목표치</th><th>실적치</th><th>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td><td></td><td></td><td></td> </tr> <tr> <td>(예시) 정책개선 이행률</td><td></td><td></td><td></td> </tr> <tr> <td>(예시) 민관협의체 개최 건수</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예시) 정책개선 이행률				(예시) 민관협의체 개최 건수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예시) 정책개선 이행률																																																																	
(예시) 민관협의체 개최 건수																																																																	

서식 13 2022년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실적보고 양식(분기, 최종)

2022년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실적보고

2022. . .

○ ○ ○ ○ (기관명)

제1장
정기평가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양평등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양평등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I. 사업추진 계획

< 사업 계획 총괄표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	주요내용	추진일정
성주류화 제도 지원	① ...		• •	
	②. ..		• •	
	③ ...		• •	
양성평등 의식·문화 사업	① ...		• •	
	②..		• •	
	③ ...		• •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① ...		• •	
	②. ..		• •	
	③ ...		• •	
기타 (지역 특성화 사업 등)	① ...		• •	
	②. ..		• •	
	③ ...		• •	

Ⅱ. 사업추진 실적

※ 사업계획 총괄표에 포함된 각 사업별 실적을 작성

1. 성주류화 제도 지원

1. (사업명)																																																																																		
① 사업예산																																																																																		
② 사업 추진계획	<p>○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사업내용</th> <th colspan="12">추진일정 (월별)</th> </tr> <tr>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h>10</th> <th>11</th> <th>12</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 ○ 홍보계획 등</p>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③ 사업 추진실적	<p>○ - - ○ -</p>																																																																																	
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명</th> <th>목표치</th> <th>실적치</th> <th>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제1장
요약제2장
사업 추진 계획제3장
사업영양평가센터 지정 절차제4장
사업영양평가센터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2. (사업명)

① 사업예산

② 사업 추진계획

○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

○ 홍보계획 등

③ 사업 추진실적

○
-
-
○
-

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3. (사업명)

① 사업예산																																																																														
② 사업 추진계획	<p>○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사업내용</th> <th colspan="12">추진일정 (월별)</th> </tr> <tr>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p> <p>○ 홍보계획 등</p>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③ 사업 추진실적	<p>○</p> <p>-</p> <p>-</p> <p>○</p> <p>-</p>																																																																													
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성과지표명</th> <th style="width: 20%;">목표치</th> <th style="width: 20%;">실적치</th> <th style="width: 30%;">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 제1장
요약
- 제2장
사업 추진체계
- 제3장
사업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 제4장
사업영향평가센터 운영
-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 부록
별도서식 등

2. 양성평등 인식·문화 사업

1. (사업명)

① 사업예산

② 사업 추진계획

○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

○ 홍보계획 등

③ 사업 추진실적

○
-
-
○
-

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2. (사업명)																																																																	
① 사업예산																																																																	
② 사업 추진계획	<p>○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30%;">사업내용</th> <th colspan="12">추진일정 (월별)</th> </tr> <tr>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r> <td></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body> </table> <p>○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 ○ 홍보계획 등</p>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③ 사업 추진실적	<p>○ - - ○ -</p>																																																																
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성과지표명</th> <th style="width: 15%;">목표치</th> <th style="width: 15%;">실적치</th> <th style="width: 10%;">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 제1장
요약
- 제2장
사업 추진계획
- 제3장
사업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 제4장
사업영향평가센터 운영
-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 부록
별도서식 등

3. (사업명)

1] 사업예산

○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2] 사업 추진계획

-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
- 홍보계획 등

3] 사업 추진실적

-
-
-
-
-

4]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3. 지역정책 모니터링

1. (사업명)																																																																														
① 사업예산																																																																														
② 사업 추진계획	<p>○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사업내용</th> <th colspan="12">추진일정 (월별)</th> </tr> <tr>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body> </table> <p>○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p> <p>○ 홍보계획 등</p>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③ 사업 추진실적	<p>○</p> <p>-</p> <p>-</p> <p>○</p> <p>-</p>																																																																													
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성과지표명</th> <th>목표치</th> <th>실적치</th> <th>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제1장
정책방향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생활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생활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2. (사업명)

① 사업예산

② 사업 추진계획

○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

○ 홍보계획 등

③ 사업 추진실적

○
-
-
○
-

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3. (사업명)

<p>① 사업예산</p>																																																																														
<p>② 사업 추진계획</p>	<p>○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사업내용</th> <th colspan="12">추진일정 (월별)</th> </tr> <tr>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p> <p>○ 홍보계획 등</p>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p>③ 사업 추진실적</p>	<p>○</p> <p>-</p> <p>-</p> <p>○</p> <p>-</p>																																																																													
<p>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성과지표명</th> <th style="width: 20%;">목표치</th> <th style="width: 20%;">실적치</th> <th style="width: 30%;">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 제1장 표지
- 제2장 사업 추진계획
- 제3장 사업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 제4장 사업영향평가센터 운영
-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 부록 별도서식 등

4. 기타 [지역 특성화 사업 등]

1. (사업명)																																																																																									
<p>① 사업예산</p>																																																																																									
<p>② 사업 추진계획</p>	<p>○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1f5fe;"> <th rowspan="2">사업내용</th> <th colspan="12">추진일정 (월별)</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e1f5fe;">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r> <td></td> <td></td><td></td><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 </tr> </tbody> </table> <p>○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p> <p>○ 홍보계획 등</p>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p>③ 사업 추진실적</p>	<p>○</p> <p>-</p> <p>-</p> <p>○</p> <p>-</p>																																																																																								
<p>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1f5fe;"> <th>성과지표명</th> <th>목표치</th> <th>실적치</th> <th>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2. (사업명)																																																																																
① 사업예산																																																																																
② 사업 추진계획	<p>○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30%;">사업내용</th> <th colspan="12">추진일정 (월별)</th> </tr> <tr> <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r> <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p> <p>○ 홍보계획 등</p>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③ 사업 추진실적	<p>○</p> <p>-</p> <p>-</p> <p>○</p> <p>-</p>																																																																															
④ 성과지표 달성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성과지표명</th> <th style="width: 20%;">목표치</th> <th style="width: 20%;">실적치</th> <th style="width: 30%;">달성도</th> </tr> </thead> <tbody> <tr> <td>※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제1장 제1장
제2장 제2장
제3장 제3장
제4장 제4장
제5장 제5장
제6장 제6장
부록 부록
별도서식 등 별도서식 등

3. (사업명)

1] 사업예산

○ 세부적인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기 수행중인 유사사업 사례와 차별성
○ 홍보계획 등

3] 사업 추진실적

○
-
-
○
-

4]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연초 사업 시작 전 설정			

서식 14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신청 양식(공간분야 및 신규·재지정 (재)준비)

* 지자체에서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로 신청할 경우 아래 양식 활용

신청 기관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부서/직위				
	성명				
신청 일시	년 월 일	컨설팅 희망 일시	년 월 일		
신청 분야	<input type="checkbox"/> 공간 조성 <input type="checkbox"/> 신규 (재)준비 <input type="checkbox"/> 재지정 (재)준비				
컨설팅 요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신청 요지 - <input type="checkbox"/> 세부 설명 - 추진현황, 향후 일정 - 추진 시 애로사항 - 검토 중인 대안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0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필요시 사진, 도면 등 첨부] </div>				
첨부파일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기타 참고사항					

제1장
정책분야

제2장
사건 추진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서식 15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의견서(중앙 컨설턴트 → 지자체)

* 서면컨설팅의 경우 활용

신청기관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부서/직위				
	성명				
컨설턴트명					
신청 일시	년 월 일	컨설팅 일시	년 월 일		
신청 분야	<input type="checkbox"/> 공간 조성	<input type="checkbox"/> 신규 (재)준비	<input type="checkbox"/> 재지정 (재)준비		
컨설팅 신청 요지					
컨설팅 의견	<input type="checkbox"/>				
	현재		개선안		
첨부파일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기타 제언					

서식 16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수행일지(컨설턴트 작성)

컨설턴트(성명)		□ 중앙 □ 지자체 전담		지자체 명		□ 신규 지정 희망			
연번	대상사업 (사업명/주제)	실시 계기		컨설팅 일시 (월/일, 00시)	컨설팅 대상 (부서명 / 담당자)	실시 방법	컨설팅 주요 내용	지자체 반영 의지 (난이도)	
		지자체 신청	이행 점검						
1	시민참여단 교육 운영 방향	✓		2021.4.10.	여성정책팀/ 김평등	대면	- 시민참여단 워크숍 프로그램 제안 -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강조 - 시민참여단의 성인지 관점 강화를 위한다면 성인지 무엇인지를 이론적, 실제적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최소한 6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	- 내년도 사업에 반영 가능	
					2021.4.19.	여성정책팀/ 김평등	전화	- 시민참여단 워크숍 프로그램(안) 검토 - 워크숍 강사 추천	- 즉시 반영 가능
					2021.4.25.	여성정책팀/ 김평등	이메일	- 시민참여단 워크숍 홍보 및 참석율 제고 방안	-
2									
3									
4									
5									

제1장
정책방향

제2장
사업추진계획

제3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실행방안

제4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공공기관

제5장
세부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서식 17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총괄보고서(컨설턴트 작성용)

□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 *(지자체별 1부씩 작성)*

2022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총괄보고서

OO시/군/구 전담 컨설턴트 : OOO

I. 2022년 여성친화도시 사업 총평

- 주무부서의 총괄업무 수행 능력, 주무부서와 타부서 간 정례회의 및 타부서 컨설팅 활용 정도, 주무부서의 시민참여단 활성화 노력, 시민참여단의 활동 및 역량강화 정도,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활동 등 추진체계 평가
- 조성 목표별 사업 구성의 문제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크, 주민 요구 반영 정도 및 지역 특화사업 발굴 정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평가
- 지정 준비 지자체의 경우 사업추진 의지, 추진체계의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II. 컨설팅 실시 현황

1. 컨설팅 내용 : 붙임 (컨설팅 수행일지)
2. 컨설팅 우수사례 (사례가 있는 경우 작성)

III. 컨설팅 개선방안

- 주무부서의 컨설팅 협력 정도, 반영 정도, 컨설턴트와 주무부서 간 관계 및 컨설팅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주무부서와의 협력체계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
-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 의견

□ 중앙 컨설턴트 (컨설턴트별 1부씩 작성)

2022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총괄보고서

중앙 컨설턴트 : ○○○ (○○분야)

I. 컨설팅 실시 현황

1. 컨설팅 내용

- 연간 실시한 컨설팅 사례를 지역별 또는 분야별 요약하여 제시

〈예 시〉

분 야	지 역(사업명)	횟 수
공공시설 건축	○○시(○○운동장)	2회(1.16, 3.30)
	△△구(△△복합문화센터)	
도시재생 사업	□□군(도시재생 뉴딜 사업)	

- 컨설팅 수행일지 별도 제출

2. 컨설팅 우수사례 (사례가 있는 경우 작성)

II. 컨설팅 개선방안

- 주무부서의 컨설팅 협력 정도, 반영 정도, 컨설턴트와 주무부서 간 관계 및 컨설팅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주무부서와의 협력체계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
-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 의견

제1장
정책방향제2장
사업 추진체계제3장
사업운영합동기센터 지정 절차제4장
사업운영합동기센터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서식 18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종합결과보고서(중앙센터 작성용)

2022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운영 상반기 / 종합 결과보고

제출일 :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
 대 표 자 : ○○○

I. 사업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 대상
3. 사업 내용

II. 사업운영 현황

1. 사업 추진체계 (※ 그림, 도표 등으로 도식화)
 - 주체별 역할
 - 컨설턴트 현황

분야 또는 전담지역		이름	소속기관·직위
중앙	도시재생		
	건축		
	...		
○○사·도	○○사, △△구		
	...		

2. 사업 추진절차
3. 사업 실적 (※ 각 목차별 실적을 상세히 기술)
 - 가. 총괄

구 분	컨설팅 횟수*	사례수*	실시방법		지자체 수	1년차	2~5년차	2단계
			대면	비대면				
중앙								
지자체 전담	지정·재지정 준비 도시							
	지정도시							
합계								
전년 실적(증감률%)								

* '시민참여단 교육 운영 방향'에 대해 총 3회의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 컨설팅 횟수는 3회, 사례수는 1개로 산정

나. 중앙 컨설팅

분야	횟수	사례수		지자체명
도시재생				
공공시설 및 건축				
교통				
...				
합계				00개

다. 지자체 전담 컨설팅

분야	컨설팅 내용	횟수	사례수		지자체명
조성계획 수립	신규지정 준비				
	재지정 준비				
추진체계 구축	부서협력 강화				
	시민참여단 운영 내실화				
	조례 제·개정				
	추진주체 역량 강화(교육)				
사업별 컨설팅	대표사업 발굴				
	여성 경제역량 강화 관련 사업				
	돌봄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 관련 사업				
	안전 증진 관련 사업				
	도시재생 관련 사업				
	여성사, 성평등 캠페인 등 문화 사업				
	...				
합계				00개	

라. 컨설턴트 워크숍 (※ 참석자, 내용, 결과 등)

III. 사업성과 및 점검

1. 주요 성과 (※ 대표 사례 포함)

제1장
정책방향제2장
사업 추진체계제3장
생태영향평가센터 지정
차별영향평가센터 지정제4장
생태영향평가센터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 대표사례 작성 샘플

지자체	○○시					
사업명	마을 육아 커뮤니티 구성					
추진기간	2022년 3월 ~ 12월					
추진주체	여성정책과(친화팀), 육아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돌봄분과, 2개 육아 커뮤니티					
예산(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구비	
대표사업 발굴·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2017년, 2018년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리뷰 • ○월 ○일 주무부서와 시행계획에 포함된 몇 개의 대표 사업(△와, ▽와, ★사업)에 대한 평가회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지역사회 현안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 주무부서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관심 높았던 본 사업을 대표 사업으로 선정 • 사업 관련하여 주무부서 경유된 공식 문서 및 그간 회의 자료 리뷰 • ○월 ○일 사업 참여 커뮤니티 운영진과 간담회 추진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서, 3개 기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돌봄분과 참여하는 사업 지원 회의 상설화 ○ 주민자치센터 1곳, 공동주택단지 1곳 커뮤니티 공간 조성(여성정책과, 사회적경제과, 회계과, 주민자치센터 협력 사업으로 추진) ○ 13가구(1인 가구 포함) 육아 커뮤니티 활동 ○ 2개 마을 맞춤형 가구 일시 보육 요구 해결 ○ 일·돌봄 연계한 돌봄 협동조합 설립 기반 조성 중 ○ 주민 센터의 마을 거점화 및 지역 여성 리더 발굴 및 확대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행과정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 운영 개선 계획 등)

- 【붙임1】 컨설팅 수행일지
- 【붙임2】 컨설팅 총괄보고서
- 【붙임3】 컨설팅 수당 지급 내역

서식 19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위촉장

위 촉 장

부문 :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성명 : ○ ○ ○

귀하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중앙 컨설턴트
(또는) ○○ 지역 전담 컨설턴트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0. ~ 0000. 0. 00.)

여성가족부장관 ○○○

제1장
포괄개요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장
생활영향평가센터 지정 절차

제4장
생활영향평가센터 운영

제5장
세부 사업 운영

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부록
별도서식 등

서식 20 여성친화도시 지자체별 이행점검 분석서(중앙센터 작성)

20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분석서			
제출기관			(재)지정연도 (연차)
			중간평가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주무부서	부서명		
	부서장		전화번호
이행점검 결과	추진기구	※ 전담인력, 행정 협업, 시민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 예산 현황 등 추진기구 운영의 잘된 점 및 보완이 필요한 점 제언	
	성과목표	※ 성과목표는 재지정도시만 해당되며, 1-4년차 지정도시는 필요시 여성 대표성 현황 점검	
	대표사례	※ 대표사례의 잘된 점, 보완이 필요한 점 제언	
	기타 사항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3. 27.></p>	<p>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제1장
총칙제2장
성별영향평가
의 일반적
사항제3장
성별영향평가
의 실시
절차제4장
성별영향평가
의 결과
관리제5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장
이 법의
시행
규칙부록
별도서식
등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p> <p>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 3. 27.></p>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p>	<p>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목개정 2018. 8. 14.]</p>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
<p>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해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목개정 2018. 3. 27.]</p> <p>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p>	<p>제3조(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p> <p>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제1장
일반규칙제2장
시행규칙
제3조제3장
성별영향평가
제6조제4장
성별영향평가
제7조제5장
시행규칙
제8조제6장
예산의 지출 및 관리
제10조부록
별도서식 등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p>
<p>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p> <p>[제목개정 2018. 3. 27.]</p> <p>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p> <p>[제목개정 2018. 3. 27.]</p>	<p>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 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8. 8. 14.]</p> <p>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p>[제목개정 2018. 8. 14.]</p> <p>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p> <p>[제목개정 2018. 8. 14.]</p>

성별영향평가법 <small>[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small>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small>
<p>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p> <p>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7. 3. 21.,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p> <p>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p>	<p>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18. 8. 14.></p> <p>[제목개정 2018. 8. 14.]</p>

제1장
일반규칙제2장
시행규칙제3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일반규칙제4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제5장
세부시행규칙제6장
예산의 지출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p>
<p>1. 시행 중인 조례·규칙</p> <p>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p> <p>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p> <p>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p> <p>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18. 3. 27.]</p> <p>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2018. 3. 27.></p> <p>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p>	<p>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법령·정책·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내용 3.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9. 19.]</p>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
<p>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p> <p>[제목개정 2016. 12. 20., 2017. 3. 21.]</p> <p>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p>	<p>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8.></p> <p>[제목개정 2014. 9. 18.]</p>
<p>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3.27></p> <p>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2. 3., 2018. 3. 27.></p> <p>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p>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8. 3., 2018. 8. 14.></p> <p>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3., 2017. 7. 26., 2017. 9. 19., 2018. 8. 14.></p>

제1장
일반제2장
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제4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제5장
세부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p>
<p>“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p> <p>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p> <p>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개정 2016. 12. 20., 2018. 3. 27.></p> <p>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2. 3., 2017. 3. 21.,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6. 12. 20., 2018. 3. 27.></p>	<p>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p> <p>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

- 제1장 일반원칙
- 제2장 중앙행정기관
- 제3장 지방자치단체
- 제4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및 임무
- 제5장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
- 제6장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 제7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 제8장 부록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p>
<p>[제목개정 2016. 12. 20., 2018. 3. 27.]</p>	<p>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p> <p>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지원</p> <p>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p> <p>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p> <p>[전문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8. 8. 14.]</p>
<p>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p> <p>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p> <p>[제목개정 2018. 3. 27.]</p>	<p>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2018. 8. 14.></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p> <p>[제목개정 2018. 8. 14.]</p>
<p>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
<p>[제목개정 2018. 3. 27.]</p> <p>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p>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목개정 2018. 3. 27.]</p>	<p>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① 삭제 <2017. 9. 19.></p> <p>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③ 삭제 <2014. 9. 18.></p> <p>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8.,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 경력 2.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p>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8.></p> <p>[제목개정 2018. 8. 14.]</p>
<p>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p>	

제1장
일반규칙제2장
사전-추진체계제3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지정 절차제4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제5장
세부 사업 운영제6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부록
별도서식 등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p> <p>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046호, 2011. 9. 1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656호, 2012. 3. 1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p>	<p>제2조(분석평가의 적용례)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p> <p>② 제4조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p> <p>③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3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530호, 2014. 3. 24.></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46호, 2013. 3. 23.> (여성가족부 직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178호, 2015. 2. 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43호, 2016. 12. 20.></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를 “교육부·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p> <p>⑥부터 ⑫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703호, 2017. 3. 21.></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616호, 2014. 9. 18.></p> <p>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545호, 2018. 3.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469호, 2015. 8. 3.></p> <p>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㉒부터 ㉓까지 생략</p>

- 제1장 일반원칙
- 제2장 사전·후진행
- 제3장 성별영향평가제도
- 제4장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 제5장 세부 사항 운영
- 제8장 예산의 지원 및 관리
- 부록 별도서식 등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320호, 2017. 9. 19.></p> <p>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095호, 2018. 8. 1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p> <p>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제7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p>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운영 안내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인	정영애
발행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02)2100-6174
팩스	(02)2100-6482
홈페이지	www.mogef.go.kr
인쇄처	중앙기획·인쇄 (02)736-2866~7
